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328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468호 2003. 3. 15.(토)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 치 법 규

[조 례]

제4064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6
제4065호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포커스(<http://www.metro.seoul.kr> 서울뉴스→서울시보 클릭)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328
- 서울시보발간일은 5일, 10일, 15일5일주기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2부)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평 일 14:00
 토요일 11:00

- ※ 시보게재접수(문서나 FAX 또는 E-mail)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4066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	12
제4067호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5
[규 칙]	
제3298호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중개정규칙	15
제3299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등개정규칙	16
제3300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24
[입법예고]	
제2003-315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3
제2003-31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34
제2003-32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6
◎ 고 시	
제2003-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결정및변경결정	37
제2003-48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38
◎ 공 고	
제2003-286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	39
제2003-289호 전력기술관리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	39
제2003-29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열람	40
제2003-29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40
제2003-29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	42
제2003-29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43
제2003-301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양도·양수	43
제2003-303호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변경)	43
제2003-305,314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44
제2003-306,310,321호 일반건설업등록	44
제2003-307,308,309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신고	46
제2003-311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	47
제2003-313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공람	47
제2003-316호 기부금품모집허가	47
제2003-317호 차량의운행제한	48
제2003-322,32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49
제2003-323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49

제2003-324호 전력시설물의설계·감리업등록 49
 제2003-329호 2003년서울특별시명예시민추천 50

◎ 구 고 시

제2003-24호 창신3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종로구) 53
 제2003-14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지형도면승인(중구) 54
 제2003-1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지형도면승인(중구) 56
 제200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중구) 56
 제2003-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용산구) 57
 제200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용산구) 59
 제2003-1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공공지)결정(변경)및지형도면(중랑구) 59
 제2003-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북구) 60
 제2003-34호 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성북구) 60
 제2003-12호 미아제5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강북구) 63
 제2003-1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형도면작성(강북구) 65
 제2003-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북구) 65
 제2003-1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도봉구) 66
 제2003-8호 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은평구) 68
 제2003-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구) 68
 제2003-16호 용강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마포구) 69
 제2003-17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마포구) 70
 제2003-7호 민영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74
 제2003-1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구로구) 75
 제2003-11호 도시계획사업(신길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영등포구) 76
 제2003-26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초구) 77
 제2003-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구) 77
 제2003-14호 하천점용허가(강남구) 78
 제2003-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남구) 78
 제2003-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강남구) 79

◎ 구 공 고

제2003-90호 전문건설업등록(종로구) 80
 제2003-91호도시계획시설사업(사직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종로구) 80
 제2003-81호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중구) 88
 제2003-85호 건설업신규등록공고(중구) 88

제2003-79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성동구)	88
제2003-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열람(성동구)	88
제2003-8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성동구)	90
제2003-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열람(성동구)	92
제2003-64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광진구)	93
제2003-72호 건설업등록(광진구)	94
제2003-87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광진구)	94
제2003-92호 전문건설업등록(광진구)	105
제2003-93호 전문건설업등록취소(광진구)	105
제2003-1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동대문구)	105
제2003-113호 도시계획사업(마을마당)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람(중랑구)	108
제2003-119호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수리(중랑구)	110
제2003-109호 도시관리계획(안)열람(성북구)	111
제2003-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열람(강북구)	111
제2003-88호 건설업(전문)양도(강북구)	114
제2003-95,100호 건설업(전문)등록처리(강북구)	114
제2003-122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은평구)	114
제2003-65호 전문건설업등록(양천구)	115
제2003-68호 강서구도노선변경(강서구)	115
제2003-69호 도로사용폐지(강서구)	115
제2003-71,72,7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강서구)	116
제2003-78,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공람(강서구)	116
제200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열람(구로구)	122
제2003-159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구로구)	125
제2003-1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열람(구로구)	125
제2003-6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금천구)	127
제2003-123호 전문건설업등록(영등포)	127
제2003-125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영등포)	128
제2003-83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동작구)	128
제2003-100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관악구)	129
제2003-88호 도시계획시설(뫼벌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에따른공사완료(서초구)	131
제2003-120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강남구)	131
제2003-6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열람(강동구)	132
◎ 사업소 고시	
제2003-37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34

◎ 사업소 공고

제2003-2호 대부계약안내및변상금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은평수도사업소) 135

제2003-5호 한강선유도공원음식점운영사업자선정(한강시민공원사업소) 136

제2003-6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성동소방서) 137

제2003-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서초소방서) 138

제2003-6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기재사항변경(구로소방서) 138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중랑구) 139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인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64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
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
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
호”로 하고,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
32조”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
세·등록세가 면제되는 하도급업자의 범
위에 전기·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
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받는 기존 시장의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자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다음의
자까지 확대함(제12조의2)
 -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2)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 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의 취득세·등록세 감
면대상중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요건
을 완화함(제19조)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
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
장에서 5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에서 3
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으로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
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인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65호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뉴타운사업 및 제3호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3.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지정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
4. 다음 각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주거환경정비
 - 나. 자치구 재정
 - 다. 문화·복지·교육
 - 라. 산업·경제
 - 마. 도시기반시설 등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본계획
3.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기타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제5조(사업지구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p>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①뉴타운지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시가지형뉴타운은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거중심형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p>②촉진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2.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3.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p>③뉴타운지구 및 촉진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발계획의 적정성 3.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4.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p>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p>제8조(기초조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변동 추이 2. 사업지구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4.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p>제9조(지정 심의) 시장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지정의 고시 등) ①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p>
---	--

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지구가 제12조 각항의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구역과 같은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정의 실효) ①제10조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방식) ①뉴타운사업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②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사업시행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각의 사업시행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사업지원 등

제14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사업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지원) ①시장은 촉진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으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다.

1.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p>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소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p> <p>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p> <p>5. 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p> <p>6.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②시장은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건축부지를 사업자에게 대부하거나, 직접 당해 업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호의 기금으로 그 부지매입비를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용자 지원조건은 각각의 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6조(지방세 감면) 촉진지구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p> <p>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및 건축물용도에관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p> <p>제17조(기타의 균형발전사업지원)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의 사업 중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재래시장활성화사업</p>	<p>2. 교육환경개선사업</p> <p>3. 청계천 복원 관련사업</p> <p>4.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p> <p>5.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p> <p>6. 기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p> <p>제18조(재원의 확보) 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p> <p>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p> <p>3.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p> <p>4.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p> <p>제4장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p> <p>제1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p> <p>3.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0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	---

<p>1. 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p> <p>2. 시 공무원</p> <p>3. 도시계획, 건축, 교육, 문화, 교통, 재정, 환경, 조경 등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p> <p>④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p>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22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p>	<p>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장 보 칙</p> <p>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인용한 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한다</p> <p>1. 제4조제2항제4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p> <p>2.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다.</p> <p>3. 제12조제1항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p> <p>4. 제14조제1항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p> <p>③(뉴타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p>
--	--

시행 전에 지정된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뉴타운지구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우리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행절차 및 방법을 정형화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분야별 추진전략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나.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뉴타운지구 또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다.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는 등 사업지구 지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시행방식을 정함(제6조 내지 제10조)
- 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뉴타운사업은 지역별 여건을 참작하여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에 의하고, 촉진지구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토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마.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민간부문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세제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내지 제16조)
- 바. 지역균형발전시책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제19조 내지 제23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66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 재난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계정(이하 “재해계정”이라 한다),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구성)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이하 “시”

<p>라 한다)의 적립금</p> <p>2. 재해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②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p> <p>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③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적립금</p> <p>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제5조 (용도) ①재해계정의 자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p> <p>②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p> <p>③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p> <p>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p> <p>가. 재해계정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건설기획국장</p> <p>나. 구호계정 - 시의 복지여성국장</p> <p>다. 재난계정 - 시의 소방방재본부장</p> <p>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p> <p>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p>	<p>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 2(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p> <p>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p> <p>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기획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방재기획과장이 된다.</p> <p>④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의3 (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p> <p>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p>
--	---

계획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소방방재본부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계정별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조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재해·재난 관련 기금을 통합·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설치근거와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제2조·제3조)
나.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적립금과 각 계정의 자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함(제4조)
다. 기금은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함(제5조)

- 라. 기금관리를 위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제6조)
기금운용관 : 재해계정-건설기획국장, 구호계정-복지여성국장, 재난계정-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 사무관
-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계정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제7조)
- 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금이율과 시중금리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
- 사.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10조)
- 아.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등 관련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67호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상수도공사”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5호에서 정한 수도시설을 신설·보수·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 포장복구공사 등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수도공사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후에 계약하는 상수도공사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상수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의 감리를 강화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감독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수도공사를 추가함.(제2조제7호)
나. 감독업무위탁 범위에 상수도공사를 추가함(제4조제5호)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298호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시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조·보좌기관 : 실·국·관·담당관·본부
2. 소속 행정기관 :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

기관·사업소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 및 내용의 창의성은 미흡하나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에도 일 정금액의 성과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 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03. 1.10) 및 동조례시행규칙(03. 1.15)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일부 직명을 정비하고, 예산성과 금운영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직개편(2003. 1.15)에 따른 직명 정비(제6조)
 - 기획예산실장 → 경영기획실장
 - 시정기획관 → 정책기획관
 - 행정관리국장 → 재무국장
- 나.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범위를 조직개편에 따라 정비(제9조 제1항)
 - 보조·보좌기관 : 실·국·관·담당관·본부
 - 소속행정기관 :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사업소
- 다. 예산절약의 경우에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대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규칙 제3299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등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등중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회계과 회계심사담당사무관”을 “총무과 물품관리담당사무관”으로, “총무과 시설관리담당사무관”을 “비상기획관 시설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소속 행정기관(시의회사무처, 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물품관리관-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경리과장, 물품출납원-상수도사업본부:경리과장, 시의회사무처:재무회계담당사무관, 서울시립대학교:관재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상수도사업본부:각과장, 시의회사무처:각 실·담당관-물품담당사무관, 각 전문위원실-의안심의담당사무관, 서울시립대학교:각과 물품담당주사

3. 2급 이하 소속행정기관(소방방재본부를 포함한다)

물품관리관-건설안전본부:총무부장, 지하철건설본부:설계관리부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총무부장, 타기관은 경리부서의 과장(과제가 없는 기관

은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건설안전본부,지하철건설본부:경리담당사무관,한강시민공원사업소:총무과장,타기관은 경리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원-건설안전본부:서무과장 및 각부1담당공무원(5급), 지하철건설본부:서무과장, 다만 공사자재에 한하여 각부공사담당공무원(5급), 각 부서의 물품담당주사 또는 물품출납공무원

제14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제협력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교류기획담당사무관”을 “국제외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중 “인사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인사행정과”를 “인사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표대상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1항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업무계획	기획담당관	연1회	2월중	인터넷게재
	예산	예산담당관	연1회	연말시의회의결 일부터1월이내	인터넷게재
	기금	예산담당관	연1회	연말시의회의결 일부터1월이내	인터넷게재
	결산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 의 예산 및 결산	예산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연1회	연말이사회의결 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결산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연1회	결산완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 사·공단인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부채현황	예산담당관 공사·공단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연도별 상환계획	공사·공단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 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 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 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 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 용내역	시 장,부시장 실장,국장,과장 4급이상사업소장	시 총무과	연1회	2월중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연1회	2월중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시립대학교총장 학장,처장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연1회	2월중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5. 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평가	심사평가 담당관	연1회	12월중	인쇄물발간
6.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한강수질	수질과	매 월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상수도 사업본부	매 월	15일경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대기	대기과	매 월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소음	대기과	분 기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7.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교통속도 및 교통량	교통계획과	연1회	7월중	인쇄물발간 또는 인터넷게재
	쓰레기발생량	청소과	분 기	3,6,9,12월중	인터넷게재
			매 년	3월중	인쇄물발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3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산업통계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12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기타통계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12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도시계획 관련통계	도시계획과	연1회	8월중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8.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관	반 기	3월중 9월중	인터넷게재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계약심사과	반 기	3월중 9월중	인터넷게재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심사분석결과	심사평가 담당관	분 기	1, 4, 7, 10월중	인쇄물발간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2항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 요한 기본계획	중장기종합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부문별중기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부문별장기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중요한기본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중장기종합계획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중간단계의안확 정일부터1월이 내	인터넷게재
	부문별중기계획 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중간단계의안확 정일부터1월이 내	인터넷게재
	부문별장기계획 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중간단계의안확 정일부터1월이 내	인터넷게재
	중요한기본계획 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중간단계의안확 정일부터1월이 내	인터넷게재
3. 집행기관에서징수하는 사용료, 수수 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	해당부서 (기관)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수수료조정계획	해당부서 (기관)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기타세외수입 조정계획	해당부서 (기관)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기타공공요금 조정계획	해당부서 (기관)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시민만족도 등	심사평가 담당관	반기	7월중 12월중	시보또는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반부패지수	감사담당관	연1회	조사완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교량	건설안전본부	수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월 이내	인터넷게재
	터널	건설안전본부	수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월 이내	인터넷게재
	지하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수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월 이내	인터넷게재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설안전본부	연1회	연말시의회의결 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집행현황	건설안전본부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재난	방재기획과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수방	치수과	수시	수시(연1회이상)	인터넷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제7조제2항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8.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 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10억원이상의 공사	해당부서 (기관)	수시	수시	인터넷게재
	1억이상의 물품구매	해당부서 (기관)	수시	수시	인터넷게재
	1억이상의 용역	해당부서 (기관)	수시	수시	인터넷게재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 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법무담당관	연1회	1월중	시보게재
	지방세 이의신청결과	세제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지방세심사청구 심의결과	세제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세제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공청회결과보고서	해당부서 (기관)	수시	공청회개최일 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처리업무편람	민원과	수시	편람제작완료 일부터 1월이내	인쇄물발간 또는 인터넷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용역사업결과	해당부서 (기관)	수시	최종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13.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현황	심사평가 담당관	연1회	3월중	인쇄물발간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적통계	지적과	연1회	1월중	인터넷게재
	개별공시지가	지적과	연1회	지가조사완료 일부 1월이내	인터넷게재
	하수처리장 운영통계	하수계획과	반기	2월중 8월중	인터넷게재
	하수도보급율	하수계획과	연1회	5월중	인터넷게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	서울산업 진흥재단	수시	추천결정후 10일이내	인터넷게재
	센터별입주업체 입주현황	서울산업 진흥재단	수시	입주결정후 10일이내	인터넷게재
	기 타	해당부서 (기관)	수시	수시	필요한 매체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 1.10) 및 동조례시행규칙(2003. 1.15)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각 규칙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 서울특별시『열린시장』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2. 주요골자

- 가. 변경된 부서명칭과 직명변경
 - 소방본부→소방방재본부, 한강관리사업소→한강시민공원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안전본부, 행정관리국장→행정국장, 인사행정과장→인사과장 등
- 나.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경우
 - 회계과장→총무과장, 회계과 회계심사담당사무관→총무과 물품관리담당사무관 등
 - 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의 경우
 - 국제협력담당관→총무과장, 교류기획담당사무관→국제외전담당사무관
- 다. 소속기관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을 조정
 -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경우
 - 건설안전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의 물품사무관리자를 1급소속 행정기관에서 2급이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변경

◎서울특별시규칙 제3300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인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정한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두되,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거지원 계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의 계정별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p>1. 사회복지(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p> <p>2.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법인 등의 종사자</p> <p>3. 관계 공무원</p> <p>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 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 (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부의사항을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 (수당 등) 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장 기초생활보장계정자금의 지원 등</p> <p>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p>	<p>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p> <p>2. 법제18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p> <p>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p> <p>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p> <p>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p> <p>6. 서울특별시 자치구</p> <p>제9조(지원신청 등)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0조(대출 및 상환) ①조례 제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p> <p>1. 대출이율 : 연 3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p> <p>2.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이내 일시 상환</p> <p>③시장(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p>
---	---

<p>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대출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p>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출자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10조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안에서 낮게 정한다.</p> <p>제12조(이차보전) ①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10조제2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p> <p>②제1항의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p> <p>③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신용보증비용)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수급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p> <p>제4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제1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제3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임차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대료”라 함은 제3호 이외의 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말한다. 3.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p>제15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이내 인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3.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14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중 철거민
---	--

<p>②임대료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이내 인자로서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급 내지 4급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3.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 4.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5.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독거노인 6. 65세이상인자와 미성년자로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p>제16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 기준) ①임대보증금 대출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2. 임대보증금이 900만원이상 1,1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까지 대출 3. 임대보증금 1,100만원이상인 경우 500만원까지 대출 <p>②임대료의 보조기준은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5인이상 세대는 5인세대 기준으로 지급한다.</p> <p>제17조(임대보증금 대출신청)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p>	<p>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보증금 대출신청서(별지 서식) 2.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제15조제1항의 대출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p>제18조(대출대상자 선정 등)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되, 대출신청금액이 대출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출대상자는 대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제2항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는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되,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9조(대출금의 상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원리금은 7년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연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p> <p>제20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현황과 당해연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15일까지 구별 지급 가능 인원을 확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매분기별로 이에 소요</p>
---	--

되는 비용을 교부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지급가능 인원의 범위안에서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제21조(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에게 매월 20일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보조금 지급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20조제2항에 의한 교부액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서울특별시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수급권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출 또는 보조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때
- 2.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때
-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구청장은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과오지급된 때에는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 2. 다른 시·도로 이주한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제5장 보 칙

제24조(사무의 위탁)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이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급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 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대출업무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

-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주택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임대보증금 대출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 계		100점	
1.세 대 원 수 (30점)	5인 이상	30점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제15조 제2항제6호의 경우 동거인 포함)
	4인	27점	
	3인	24점	
	2인 이하	21점	
2.세대주 연령 (20점)	60세 이상	20점	
	50 ~ 59	18점	
	40 ~ 49	16점	
	40세 미만	14점	
3.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0년 이상	30점	○거주기간 산정은 임대주택 입주확정일을 기준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서울시 전체 거주기간에서 제외 ※세대주만 타시도로 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 세대주 재전입일부터 기간 산정
	8년이상 ~ 10년미만	25점	
	6년이상 ~ 8년미만	20점	
	4년이상 ~ 6년미만	15점	
	2년이상 ~ 4년미만	10점	
	1년이상 ~ 2년미만	5점	
	1년미만	0점	
4. 세대원 형태 (20점)	유 형 3	20점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 65세이상 - 장애인 1 ~ 4급 - 소년·소녀가장세대:18세미만 - 모·부자세대 -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청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
	유 형 2	18점	
	유 형 1	16점	

〈별표2〉

임대료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배 점	배 점 기 준
총 계		100점	
1.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0년 이상	30점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서울시 전체 거주기간에서 제외 ※세대주만 타시도로 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 세대주 전입일부터 기간 산정
	8년이상 ~ 10년미만	25점	
	6년이상 ~ 8년미만	20점	
	4년이상 ~ 6년미만	15점	
	2년이상 ~ 4년미만	10점	
	1년이상 ~ 2년미만	5점	
	1년미만	0점	
2.세대별 소득인정액 (30점)	100%이상 ~ 105%미만	30점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 준임
	105%이상 ~ 110%미만	25점	
	110%이상 ~ 115%미만	20점	
	115%이상 ~ 120%미만	15점	
3.임대주택 보증금 기준 (40점)	500만원 미만	40점	○보증금기준은 월 임대료를 연 12%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 ※무상임대거주자는 지급제외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35점	
	1,0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30점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25점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20점	
	2,5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	15점	
	3,000만원이상 ~ 3,500만원미만	5점	
	3,500만원이상	0점	

<별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신청자격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재해철거민, 비닐하우스 철거민				
가 족 수	명(본인, 처, 자(명), 부·모, 조부, 조모, 기타())				
세대구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근로 능력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입주대상 임대주택	위 치				
	임대주택 유 형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개선임대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천원)	
대 출 신 청 액	금 천원(W)				
첨부 1. 임대차계약서 1부. 2. 대출신청 자격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대출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0</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귀하</p>					
위 임대보증금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함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의 개정(2002. 12.26)시행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주택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제2조)

나.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의 계정별로 설치·운영하되,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거지원계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제3조)

다. 기초생활보장계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상환조건·이차보전 등에 관하여 정함(제8조 내지 제13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 동법 제18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 서울특별시자치구

라. 주거지원계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 함 (제15조 내지 23조)

○ 대상

- 임대보증금대출은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이내 인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4.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

- 임대료보조는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 이내 인자로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 1급 내지 4급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3.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등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5.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독거노인
6. 65세이상인자와 미성년자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

○ 지원기준 등

- 임대보증금에 따라 500만원 까지 대출, 7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3%

- 보조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비 지급기준에 의함

마. 기금을 대출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업무를 시금고지정 금융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함(제24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3-315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1995년

부터 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체계가 시기별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요금체계로서 특정시기에 이용자가 집중됨으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요금수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공원 및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 (원)		
			현 행	개 정 안	
				성 수 기 (4-6월,9-10월)	비 수 기 (7,8월,11-3월)
어린이대공원	입 장 료	어 른 1회	900	1,500	900
		청 소 년 1회	500	1,000	500
		어 린 이 1회	무료	무료	무료
서울대공원	입 장 료 (동·식물원)	어 른 1회	1,500	3,000	1,500
		청 소 년 1회	1,200	2,000	1,200
		어 린 이 1회	700	1,000	700

나.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시설별		징수 구분	금 액(원)		
			현 행	개정안	
				성수기 (4-6월, 9-10월)	비수기 (7,8월, 11-3월)
서울 대공원	돌고래 쇼 장	어 른 1회	500	1,500	1,000
		청소년 1회	400	1,000	800
		어린이 1회	300	500	300
남 산 공 원	식물원	어 른 1회	300	500	
		청소년 1회	200	300	
		어린이 1회	100	200	
	차 량 통행료 (1시간)	버스, 대형화물차	700	1,500	
		승용·승합차(15인 이하)	500	1,000	
		이륜, 소형화물차	300	500	
어린이 대공원	야 외 음악당	주간 1회	40,000	100,000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4. 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장(참조 : 공원과장, 전화 : 3707-9611, FAX : 3707-96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100-744, E-Mail : jeara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31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위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기획, 공연, 전시 및 보급 함으로써 문화가 활짝 꽃피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1)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함
- 2)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육성사업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3) 법인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자치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 4)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서울시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5)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시와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 수익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
- 6)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관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이사임면·이사회·감사 및 직원·공고·사업·기금·정관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

도록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 8) 대표이사는 서울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도록 함
 - 9) 재단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10) 재단은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11) 재단은 그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1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시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 시설운영·관리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1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14)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5) 이 조례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문화재단육성기금(기본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함
 - 16) 부칙에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의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작성하여 2003년 4월 4일까지 서울 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우편번호 100-110/ 전화3707-9415 팩스 3707-9429/ e-mail : cultura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32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 2) 공사의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 3)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고, 체납시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토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함이 타당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코자함

3. 주요내용

- 가.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 변경(안 제9조 제1항)
 - 산업경제국장·시정기획관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
- 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 2월 이내로 변경(안 제19조 제1항)
- 다. 과태료 부과방법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제34조의2)
- 라. 과태료 납부기간 및 독촉장 발부기간 추가(안 제34조의3)
- 마.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고 체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근거조항 명시(안 제34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3.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농수산유통과장, 연락처 6321-4065, (FAX) 3707-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결정및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1. 결정 및 변경결정 취지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도시자연공원 변경

- 해발 약115m 고지대에 건립된 나홀로 아파트가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산공원에 편입하고 철거후 공원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노후 홍제시민아파트를 연결된 안산자연공원에 편입하기 위해 2001.

4. 4(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동 아파트도 공원에 편입토록 수정 가결된 사항임

○서대문구 홍제동 459-5번지 경관녹지 변경(폐지)

-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진입로 개설후 자투리로 남은 토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녹지의 기능도 없고 인접대지의 맹지 방지 차원에서 해제후 도로로 전환하고자 함

○성동구 용답동 용답휴식어린이공원 변경

- 주변이 도로와 하천으로 분리된 공원으로 주택가로부터 접근이 어려워 어린이 공원으로는 입지가 부적합하며
- 지하철2호선 신답역과 접해있어 지하철이용객 등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기능에 맞게 근린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중랑구 신내동 신내I.C 광장 결정

- 현재 시행중에 있는 능산로(신내I.C~퇴계원간) 확장시 교통량 증가로 기존 다이아몬드형인 신내I.C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광장으로 결정하여 능산로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 원 (안산)	도 시 자연공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11번지	2,087,511.9	증)1,193	2,088,704.9	고지대 나홀로 아파트부지 연결 공원에 편입
폐지	녹 지	경관녹지		서대문구 홍제동 459-5번지	4.7	감)4.7	0	기능성이 없는 녹지 폐지
변경	공 원	어린이	근린	성동구 용답동 128-3번지	6,046.9	0	6,046.9	시설의 세분변경 (어린이→근린)
신설	광 장	교통광장		중랑구 신내동 278번지 일대	0	증)29,159	29,159	신내I.C 광장 신설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아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731-6349, 6749)
 -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도로계획과 (☎ 3707-813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과(☎ 330-138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과(☎ 2290-738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정비과(☎ 490-33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8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계획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종합의료 시설	-	동작구 신대방동 395 번지 일대	14,361	증)2,975	17,336	'86.7.29	보라매병원
변경	공 원	근린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번지 일대	420,550	감)2,975	417,575	'86. 6.20	보라매공원
변경	공 원	근린공원	동작구노량진동, 본동 등 일대	366,110	증)8,850	374,960	'77. 7.14	노량진공원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731-6347), 동작구 도시관리과(☎ 820-1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86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번호 : 제서울S-1-264호
- 업체명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 지순, 김자호, 이광만
- 법인등록번호 : 110111-0380967
- 소재지 : 종로구 원남동 150-2

- 종류 : 종합감리업
- 등록일자 : 2002. 2.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89호

전력기술관리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 통지서공시송달

다음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2003. 3. 3까지 기술인력을 보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제25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서를 공시송달하니 기한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문1종 설계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새한설계콘설탄트 대표 김기승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8-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위반(기술인력 부족)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등록취소			
5. 법 적 근 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제16조제2호			
6. 청 문	기관명	서울특별시청	담당부서명	소비자보호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소문별관9층, ☎ 3707 - 9338)		
	일 시	2003년 04월 03일(목) 13:00		
	장 소	서울특별시청 소비자보호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소비자보호과 지방기계주사	
성 명		류 재 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3707-93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9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열람

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가. 열람기간 : 2003. 3. 8 ~ 2003. 3.21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731-6342~5)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350-1385~8)

다.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해제)안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6,194,889	감3,593,000	162,601,889	
은평지구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166,194,889	감3,593,000	162,601,889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마. 위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이므로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9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448	(사)한국교통 시민협회 도봉지부	도봉구 도봉2동 624-94 (2층)	임관빈	2003.2.3	· 국가 교통발전 및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
449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마포구 신수동 91-187	이경희	2003.2.5	· 빈곤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및 연 구와 공부방 교사 교육활동 및 연구
450	전국산림보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서초구 서초동 1443-23	이원거	2003.2.10	· 산지정화 및 등산객 질서계도 · 도·남벌금지 및 부정임산물 반출금지계도 · 밀렵행위 예방 및 계도 · 산불방지캠페인 등 산림보호 활동
451	서울국제친선협회	종로구 신문로 1가 24 고려빌딩 816호	이순주	2003.2.11	· 국내거주 외국인의 현지적응을 돕고 국제교류 목적에 지향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계하여 서울시의 시민문화 활동에 기여하는 사업
452	참정의실천 시민연대	강남구 논현동 211-9 세창오피스 204	조동표	2003.2.14	· 부정부패 방지 및 캠페인
453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3 하선빌딩 4층	김기성	2003.2.13	· 재가 독거노인 생활후원사업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 후원 및 학비지원 사업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복지 정보 제공
454	민족상생 평화통일연합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311호	류갑중	2003.2.21	· 남북평화통일 관련 제반사업
455	평화인권연대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손상열	2003.2.24	·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 사업 비핵·군축·평화·인권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출판 사업 등
456	사랑의 우편수취함운동 서울특별시지부	종로구 당주동 32 황금빌딩 702호	이진일	2003.2.24	· 우편수취함 달기 운동 · 우편수취함·거리표지판 설치 및 보급사업 등
457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용산구 효창동 255	이현숙	2003.2.25	· 노인복지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 봉사활동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458	(사)평화운동연합	종로구 홍파동 152-5 5층	이수성	2003.2.28	· 비폭력적인 국민참여 평화·통일운동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9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등록 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사항		변경등록 일자
			당초	변경	
395	서울특별시 어머니합창단 연합회	소재지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텔 147	노원구 중계2동 505 롯데아파트 9-806	2003. 2. 5
		대표자	강인숙	윤종순	
433	N.G.O. 한국기업 장애인협회	단체명칭	서울장애인기업협회	N.G.O. 한국기업 장애인협회	2003. 2. 5
143	국민대화합 전국연합	단체명칭	서민복지전국연합사랑의손잡 기운동본부	국민대화합 전국연합	2003. 2. 6
351	서울북부지역 사회교육협의회	단체명칭	서울강북지역 사회교육협의회	서울북부지역사회 교육협의회	2003. 2. 8
		소재지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해상빌딩 17층	종로구 인의동 28-2 삼우빌딩 본관 1층	
264	서울 YWCA	대표자	이행자	김숙희	2003. 2.14
182	기독교여민회	대표자	최순옥, 정태효	박후임	2003. 2.14
394	이주여성 인권센터	단체명	여성이주노동자의집	이주여성인권센터	2003. 2.14
		주된사업	여성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지원활동	여성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 노동·법률·생활상담 및 쉼터제공 등	
426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	소재지	성동구 성수2가 3동 281-30 (3층)	서초구 방배4동 822-21 (지하1층)	2003. 2. 17
		대표자	조경향	천정명	
415	푸른시민포럼	단체명칭	민족사회운동연합	푸른시민포럼	2003. 2. 18
		대표자	도천수	박성규	
38	친절기사 교통봉사대	대표자	정병호	진덕인	2003. 2. 26
284	한국대인지뢰 대책회의	대표자	서재일	이승영	2003. 2. 2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29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다음의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등록번호 : 제 서울-02569
- 업체명 : 전일전력
- 대표자 : 이창열
- 주민등록번호 : 770816-*****
- 소재지 : 강동구 길동 379-18
- 위반내용 : 등록기준미달 (기술능력2인 부족)
- 행정처분 : 등록취소
- 등록취소일 : 2003. 3. 4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1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양도·양수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양도인
 - 등록번호 : 서울S-1-177
 - 회사명 : (주)그룹원
 - 대표자 : 박상녕
 - 소재지 : 서초구 서초동 1702-7
 - 주민등록번호 : 550508-*****
 - 업종 : 종합감리업
- 양수인
 - 등록번호 : 서울S-1-177
 - 회사명 : (주)그룹원이앤지
 - 대표자 : 이상렬
 - 소재지 : 서초구 서초동 1702-7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14437
- 업종 : 종합감리업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3호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변경)

도로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특별시도(당초)
 - 노선명 : 상암~대흥선
 - 노선번호 : 0115
 - 기점 : 서부면허시험장(상암동 338)
 - 종점 : 이대입구(대흥동 2)
 - 총연장 : 8.05km
 - 중요경과지 : 합정로 대흥로 동막길
난지도길
 - 전용구간 연장 : 8.05km
 - 비고 : 시도인정(기정)
- 특별시도(변경)
 - 노선명 : 상암~대흥선
 - 노선번호 : 0115
 - 기점 : 서부면허시험장(상암동 441)
 - 종점 : 이대입구(대흥동 2)
 - 총연장 : 8.73km
 - 중요경과지 : 합정로 대흥로 동막길
난지도길
 - 전용구간 연장 : 8.73km
 - 비고 : 서부면허시험장입구~ 가양로간
(0.68km)연장 추가
- 특별시도(신규)
 - 노선명 : 상암선
 - 노선번호 : 0112
 - 기점 : 강변북로(상암동487)
 - 종점 : 상암사거리(상암동4-47)

- 총연장 : 1.83km
- 중요경과지 : 월드컵경기장
- 전용구간 연장 : 1.83km
- 비고 : 추후 개설될 제2성산대교(가칭)와 연결도로임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5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상호 : (주)미동이앤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7313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2-21
- 대표자 : 김 준
- 업종(등록번호) : 토목공사업01-0043
- 반납사유 : 토목건축등록(겸업)
- 반납수리일자 : 2003. 3. 7

- 상호 : (주)미동이앤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7313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2-21
- 대표자 : 김 준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179
- 반납사유 : 토목건축등록(겸업)
- 반납수리일자 : 2003. 3. 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4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수리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상호 : (주)동함종합건설
- 법인등록번호 : 110111-1838303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
- 대표자 : 홍승복
- 업종 : 토목공사업

- 등록번호 : 01-0199
- 반납사유 : 자진반납
- 반납수리일자 : 2003. 3. 8
- 상호 : (주)동함종합건설
- 법인등록번호 : 110111-1838303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
- 대표자 : 홍승복
- 업종 : 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01-0235
- 반납사유 : 자진반납
- 반납수리일자 : 2003. 3. 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6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업종(등록번호) : 토목건축공사업-01-0222
- 상호 : (주)미동이앤씨
- 대표자 : 김 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7313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587-6015)
- 경력임원 : 김광문(531018-*****)
- 등록일 : 2003. 3. 7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3
- 상호 : 일신씨앤씨(주)
- 대표자 : 김형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20509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95(☎ 586-9836)
- 경력임원 : 이병헌(470120-*****)
- 등록일 : 2003. 3. 7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4
- 상호 : 부한건설(주)
- 대표자 : 김계식·김상철
- 법인등록번호 : 110111-0864888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51(☎ 2276-1655)
- 경력임원 : 윤국열(491106-*****)
- 등록일 : 2003. 3. 7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5
- 상호 : 만화건설(주)
- 대표자 : 윤용보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15592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2-5(☎ 867-0211)
- 경력임원 : 기야서(280830-*****)
- 등록일 : 2003. 3. 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0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업종(등록번호) : 조경공사업-01-0130
- 상호 : 원성종합건설(주)
- 대표자 : 차수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47935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18(☎ 2263-0701)
- 경력임원 : 차수환(510915-*****)
- 등록일 : 2003. 3. 8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6
- 상호 : 신림산업개발(주)
- 대표자 : 엄재각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01740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04-8(☎ 2636-7066)
- 경력임원 : 김광목(480704-*****)
- 등록일 : 2003. 3. 8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7
- 상호 : (주)대안건축자연을담은집
- 대표자 : 류현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2479750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30(☎ 732-4054)
- 경력임원 : 박영찬(360212-*****)
- 등록일 : 2003. 3. 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1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업종(등록번호) : 토목공사업-01-0424
- 상호 : (주)한세계이십일
- 대표자 : 광덕용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65929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81-50(☎ 997-8316)
- 경력임원 : 손은숙(510427-*****)
- 등록일 : 2003. 3.11

- 업종(등록번호) : 토목공사업-01-0425
- 상호 : 동서이에프씨(주)
- 대표자 : 김성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2265795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3동 525-23(☎ 2207-8078)
- 경력임원 : 김영수(450803-*****)
- 등록일 : 2003. 3.11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8
- 상호 : 로또종합건설(주)
- 대표자 : 황계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09511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10-2(☎ 736-1541)
- 경력임원 : 윤철상(431024-*****)
- 등록일 : 2003. 3.11

- 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639
- 상호 : (주)지디알건설
- 대표자 : 정성경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19148
-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6-5(☎ 3477-4133)
- 경력임원 : 노현수(480120-*****)
- 등록일 : 2003. 3.1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7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190호
 - 상호 : (주)베네트멤버스
 - 대표자 : 천태준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9-12
보륜빌딩 3,4층
- 신고사항
 - 휴업기간 : 2003. 3. 1 ~ 2003. 8. 1
 - 사유 : 영업재개 준비부족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65호
 - 상호 : (주)원스넷인터내셔널

- 대표자 : 성재경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22-9 삼화B/D 3층
- 신고사항
 - 휴업기간 : 2003. 3.10 ~ 2003. 4.30
 - 사유 : 영업실적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8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361호
 - 상호 : (주)썬파트너인터내셔널
 - 대표자 : 김종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8
대원빌딩 12층
- 신고사항
 - 휴업기간 : 2003. 3. 8 ~ 2004. 3. 7
 - 사유 : 영업실적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09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40호
 - 상호 : (주)에이치유비넷
 - 대표자 : 오성일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2-16
대명빌딩6층

- 신고사항
 - 휴업기간 2003. 3. 8 ~ 2003.12.31
 - 사유 : 영업실적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1호

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 2003 - 40 호
2. 허가년월일 : 2003년 3월 7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전통굿문화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2 (구 향만청별관 404호)
5. 대표자 : 임관호
6. 설립목적 : 우리나라 굿문화인들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바른 굿문화를 계승·보존함으로써 굿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3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공람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소재지 관할구청 공원녹지과
 - 공람장소 : 송파구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410-3395~7
 - 공람장소 : 강동구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480-1395~7
-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
 - 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나)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1)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익시설-학교)의 설치계획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합 계	6개 시설	66,316	
1	거마초등학교	송파구 마천동 227번지 일원	26,006	
	거마중학교			
	마천고등학교			
2	길명초등학교	강동구 길동 25번지 일원	12,700	
3	강명고등학교	강동구 명일동 217-3번지 일원	12,810	
4	선사고등학교	강동구 암사동 249번지 일원	14,800	

-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마. 상기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추후 결정고시시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6호

기부금품모집허가

「대한적십자사」의 1개 단체에서 제출한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p> <p>○ 허가번호 : 제2003-4호 ○ 모집자 : 대한적십자사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 ○ 모집목적 :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마련 ○ 모집기간 : 2003. 3.23 ~ 6.30 ○ 모집금액 : 1억원(현금 및 의약품 등) ○ 모집지역 : 전국 ○ 모집방법 : 신문광고, 공연, ARS, 온라인, 행사참가자 성금</p> <p>○ 허가번호 : 제2003-5호 ○ 모집자 : 재단법인 양호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대한빌딩 7층</p>	<p>○ 모집목적 : 경제적 미자립 불우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 모집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03.12.31 ○ 모집금액 : 5천만원(현금) ○ 모집지역 : 전국 ○ 모집방법 : ARS모금,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모바일결제</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17호 차량의운행제한</p> <p>도로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 하고자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p>
--	--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행주대교)		
제한의 대상	<p>○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차량최대제원이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p>	구 간	<p>○ 위 치 - 강서구 개화동 206-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대교북단 종점간</p> <p>○ 규 모 - 폭 : 상행 14.5m(3차로) 하행 14.5m(3차로) - 연장 : 2,043m(행주대교 1,460m, 개화육교 90m포함)</p>
기 간	2003년 3월 20일부터 무기한		
이 유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		
문의처	<p>○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3707-8166~7)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 3708-2394~5)</p>		
위치도	(생략)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및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에 도면비치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2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223호
- 상호 : (주)메카인리빙
- 대표자 : 박주하

○ 변경내용

- 변경전
 - 상호 : 엔피에이치인터내셔널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 전화 : 02-2601-5686
- 변경후
 - 상호 : 메카인리빙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3 인스토피아빌딩609
 - 전화 : 02-574-3580

나. 변경일자 : 2003년 3월 11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90호
- 상호 : 골든프로슈머(주)
- 대표자 : 이재순

○ 변경내용

- 변경전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제리제빌딩 A-1113
- 변경후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37-24 명신빌딩 2층

나. 변경일자 : 2003년 3월 11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 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3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폐업신고사항을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440호
- 상호 : (주)에이치유비넷
- 대표자 : 오성일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2-16 대명빌딩

○ 신고사항

- 폐업일자 : 2003. 3.10
- 사유 : 영업실적저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4호

전력시설물의설계·감리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등록번호 : 제서울S-2-190호
- 업체명 : 우선전기(주)
- 대표자 : 김광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37341
-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95-5
- 종류 : 전문감리업
- 등록일자 : '03. 3.10

- 등록번호 : 제서울E-2-242호
- 업체명 : 우선전기(주)
- 대표자 : 김광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37341
-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95-5
- 종류 : 전문설계업(1종)
- 등록일자 : '03. 3.10

- 등록번호 : 제서울E-2-243호
- 업체명 : (주)비전티엘
- 대표자 : 양형철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08969
- 소재지 : 광진구 구의동 221-28
- 종류 : 전문설계업(1종)
- 등록일자 : '03. 3.10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29호

2003년서울특별시명예시민추천

서울시는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1. 명예시민 추천기준

- 외국인으로서는 서울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1)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 2) 서울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 3) 서울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4) 과학·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5)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선행을 몸소 실천한 자

2. 추천권자

- 공공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 10인 이상의 시민

3.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3. 3.15 ~ 4.18
- 우편접수의 경우 4. 18일자 발송기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시청본관4층)
- 추천서 양식 인터넷 게재

4. 참고사항

-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및 「기념메달」을 드리며 서울시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개별 통지를 하여 드리고 2003년 지구촌 한마당 행사기간중(5월 25일 예정)에 명예 시민증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국제의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31-6219. FAX :731-6219)

【별표 2】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직업·직위	
서울거주 기 간			
가족관계		한 국 어 구사정도	(상 중 하)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

4. 추천자연락처(전화, 담당자) :

추 천 자 : 직위 성명 (인)

※시민추천시에는 뒷면 연대서명서(10인이상) 반드시 첨부요망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시민추천자 연대서명서

연번	성명	주 소	날 인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2003-24호

창신3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3호(2001. 6. 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0호(2002.12.21)로 지구변경 고시되고 종로구고시 제2002-98호(2003. 1.10)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고시된 창신동 610, 23번지일대 창신3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주

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의 변경)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종 로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구명 : 창신3지구
- 위치 : 창신2동 610, 23번지 일대
- 면적 : 2,808.4㎡

나. 사업시행기간 : 2002.12 ~ 2004.12.31

다.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라. 창신3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808.4	100	2,808.4	100	
택지	택 지	1,835.8	65.4	1,837.1	65.4	증)1.3㎡
도로	소 계	972.6	34.6	971.3	34.6	감)1.3㎡
	도 로	844.1	30.0	842.8	30.0	폭 6m~4m
	보행자전용도로	128.5	4.6	128.5	4.6	폭 3m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곡선 구간을 굴곡점형태로 변경

주) 도로면적은 각각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2003년 3월 15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기능	연 장 (m)	면적(m ²)		기 점	종 점
								기정	변경		
계					5개 노선		215.4	972.6	971.3		
신설	소로	3	1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82.4	507.9	508.0	창신2동 611-9	창신2동 610-28
신설	소로	3	2	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4.6	167.5	166.0	창신2동 610-20	창신2동 610-22
신설	소로	3	3	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0.7	87.2	87.2	창신2동 610-12	창신2동 23-736
신설	소로	3	4	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5.6	81.5	81.6	창신2동 611-7	창신2동 23-736
신설	소로	3	5	3	보행자 전용 도로	특수 도로	62.1	128.5	128.5	창신2동 23-736	창신2동 23-551

중 구 청 장

주) 도로면적은 각각면적을 포함한 면
적임

3) 기타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개량계획, 건축계
획은 당초 계획과 동일함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과(☎ 731-1407)로 문의하여 주시
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고시제2003-14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호(2003. 3. 3)
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된 우리구 순화
동 1-1번지 일대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
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 따른 지형
도면승인 조서

○신설

- 시설명 : 학교
- 시설의 세분 : 고등학교
- 위치 : 중구 순화동 1-1일대
- 면적 : 53,826.3m²
- 비고 : 이화여자 고등학교

2. 관계도서 : 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생략)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시관
리과(☎ 2260-1904) 및 지적과(☎ 2260-
149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화여고 토지 및 건물조사(총괄)

■ 토지 조사

단위 : m²

필지수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결정면적	잔유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1	순화동	1-1	학	37,199.2	37,199.2	-	학교법인 이화학원	
2	정동	27-3	학	15,937.6	133.4	15,804.2	서울특별시(교육감)	창덕여자중학교 (교육청토지)편입
3		27-32	사	384.5	384.5	-	국유지	
4		27-33	사	30.7	30.7	-	국유지	
5		34-23	사	587.4	95.8	491.6	국유지	
6		32-1	학	13,429.8	13,429.8	-	학교법인 이화학원	
7		34-9	대	149.3	149.3	-	학교법인 이화학원	
8	충정로1가	83	학	2,403.6	2,403.6	-	학교법인 이화학원	
합계				70,122.1	53,826.3	16,295.8		

■ 건축물 현황

단위 : m²

구분	번호	건물명	지번	지목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건축물높이/층수	비고
기존	1	유관순회관	순화동 1-1	학	3,164.53	8,282.68	1,820.20	지하1층, 지상3층	
	2	도서관	순화동 1-1	학	357.80	1,070.09	42.35	지하1층, 지상3층	
	3	서문수위실	순화동 1-1	학	14.08	14.08	-	- 지상1층	
	4	교사동 1	정동 32-1	학	1,124.76	8,565.81	553.09	지하2층, 지상7층	
	5	교사동 2	충정로1가 83	학	2,955.37	4,165.62	600.99	지하1층, 지상2층	
	6	체육관	충정로1가 83	학	639.01	639.01	-	- 지상1층	
	7	보일러실	충정로1가 83	학	137.15	137.15	-	- 지상1층	
	8	기숙사	충정로1가 83	학	165.60	365.24	34.04	지하1층, 지상2층	
소계					51,422.70	16,295.8	0		
장래계획	교사동3	정동 32-1	학	1,915.00	8,659.00	3,800.00	지하2층, 지상5층		
합계					56,229.90	16,295.8	0		

◎중구고시제2003-1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호(2003. 3. 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된 우리구 홍인동 131번지 일대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조서.

○신설

- 시설명 : 문화시설
- 시설의 세분 : 공연장 및 문화 체육 센터
- 위치 : 중구 홍인동 131일대
- 면적 : 9,459.84㎡
- 건축규모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7층(60m)이하

2. 관계도서 : 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생략)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시관리과(☎ 2260-1904) 및 지적과(☎ 2260-149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고시제200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03-54호(2003. 2.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중구 신당2동 425-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2260-4035) 및 건설관리과(☎ 2260-40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25-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2동 425-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폭 6m, 연장 18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0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2260-4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당2동 425-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지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성 명	주 소
1	중구 신당2동 418-16	도	64	국(건설부)					
2	중구 신당2동 425-29	대	49	이옥직	서울 중구 신당2동 425-1	1/5	가 압 류	신동욱	도봉구 창동 658-70
							근저당권	황학동 새마을금고	중구 황학동 267
				김양진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아파트 120-102	1/5	가 등 기	이옥직	중구 신당동 425-1
							가 압 류	유병욱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92 형석아파트 3-504
							가 압 류	신동욱	도봉구 창동 658-70
				김동진	서울 노원구 월계동 929 현대아파트 104-2106	1/5	가 압 류	신동욱	도봉구 창동 658-70
							압 류	서울시 중구	중구 예관동 120-1
				김선주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211	1/5			
김은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8 극동미래주아파트 102-1002	1/5							

◎용산구고시제200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

1. 우리구 도원동 19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도시관

리계획 변경)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용 산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폭원(m)							
기정	소로	2	8	구획 도로	497	도원동 4-8	도원동 12-13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994-295 (1994.9.5)	
변경	소로	2	8	구획 도로	497	도원동 19	도원동 19	일반 도로		일부구간선형 변경 (23m), 단순지번정정

나.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비치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정비과(☎ 710-3385) 및 지적과(☎ 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고시제200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형도면

1. 용산구 한강로3가 ~ 성동구 응봉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구간(동부이

촌동~한강대교북단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용 산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6	25~40	보조간선 도로	7,800	한강로3가	응봉동	일반 도로	총고제722호 (1936.12.26)	
변경	대로	3	26	25~40	보조간선 도로	7,800	한강로3가	응봉동	일반 도로		한강대교북단 도로폭 조정 L= 200m B=31→34~41m

나.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비치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정비과(☎ 710-3385) 및 지적과(☎ 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고시제200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으나 정정내용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용 산 구 청 장

- 1. 사업명 : 경희연립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 2. 정정 고시내용

사 업 비	정정 전	정정 후
	56,591,132천원	28,295,566천원

◎중랑구고시제2003-1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공공지)결정(변경)및지형도면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43호(2002.11.15)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내동 522-1일대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연장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6	국지도로	44	신내동 395-20	신내동 395-15	

나.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공공공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466-9	-	523.6	523.6	-	
변경	공공 공지	중랑구 신내동 522-1일대	963.84	-	963.84	2002. 11.15	전체면적 증·감 없이 일부 위치변경 -위치 : 신내동 522-1 -변경면적:86m ²

다. 관련도면 : 게재생략(서울특별시중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490-3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고시제2003-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431번지 12호 외 91필지 지상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면적	16,091.60㎡	16,028.00㎡	감) 63.60㎡
연면적	61,875.30㎡	62,122.70㎡	증) 247.40㎡
생활편의시설(상가)	362.㎡52	556.50㎡	증) 193.98㎡
건폐율	20.48%	21.14%	증) 0.66%
용적율	272.60%	275.23%	증) 2.63%

4.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 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5. 기타사항 : 성북구청 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고시제2003-34호
 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3-41(2003. 3. 8)호로 고시된 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 지정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

2003년 3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성명 : 계성제지직장조합 외 5개조합 조합장 김종호 외5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0-8호 신광빌딩 602호
 - 성명 : 중앙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승규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3. 사업계획변경 내역

법)규정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68조별표3제5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생략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72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종암제5주택재개발사업
- 나. 재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지정구분 : 신규
 - 사업의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의 명칭 : 종암제5주택재개발구역
 - 위치 : 성북구 종암동 100-56번지 일대
 - 면적 : 39,290㎡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39,290	100	
	일반주거지역	39,290	100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소 계	8,150	20.74	
	도 로	5,959	15.17	신설, 변경
	공 원	2,191	5.58	신설
택 지	소 계	31,140	79.26	
	택 지 1	29,107	74.08	조합원, 일반분양아파트
	택 지 2	926	2.36	근린생활시설
	택 지 3	1,107	2.82	임대아파트6

라.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정비계획
(1) 도로결정조서

결정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6.0	국지도로	일반도로	456	종암동 105-275	종암동 115-23	재개발구역에포함 시점:105-285 종점:100-90 폭6m→8m 연장 111m
변경	소로	3류	1	6.0			456	종암동 105-275	종암동 115-23	
기정				15.0	집산도로	일반도로	850	구서울상대 1-8	종암동중 3-12	재개발구역에포함 시점:108-66종점:3-3 59 폭15m→20m 연장 79m
변경	중로	2류	127	15.0			850	구서울상대 1-8	종암동중 3-12	

결정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중 점	
신설	소로	2류	2	15.0	국지도로	일반도로	336	중암동 99-37	중암동 3-358	구역내한함 현황도로확폭
신설	소로	2류	3	8.0	국지도로	일반도로	251	중암동 108-45	중암동 108-66	사도구간폐지 시점:108-66중점 :108-74 일부구간12m 로 확폭 연장 99m
신설	소로	2류	4	8.0	국지도로	일반도로	37	중암동 107-25	중암동 107-29	
신설	소로	2류	5	8.0	국지도로	일반도로	75	중암동 100-86	중암동 99-16	
신설	소로	3류	2	6.0	국지도로	일반도로	38	중암동 99-17	중암동 99-37	

(2) 면적시설조사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	중암동 99-17번지 일대	2,191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
설계획

(1)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암동100-56번지 일대	303	-	-	-	303	철거이주 후 아파트 신축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 계획			
	명 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신설	택지1	29,107	중암동 100-56번지일대	조합원, 일반아파트	30%이하	220%이하	75m이하, 24층이하
	택지2	926	중암동 4-9번지일대	근린생활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택지3	1,107	중암동 99-37번지일대	임대아파트	30%이하	220%이하	35m이하 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 ○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는 사유			해당없음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 건축선 지정 없음(건축법규에 의함)				
<p>바. 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p>				<p>◎강북구고시제2003-12호 미아제5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5호(2000. 1. 2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서 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1-102호 (2001.10.20)로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 된 미아제5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 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p>			

<p>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수립 하였기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901-23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p>	<p>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명 : 미아5 주거환경 개선지구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05번지 일대 ○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9,285㎡ - 변경 : 9,285㎡ - 비고 : 변경 없음 <p>나. 사업시행기간 : 2001.11. 1~2004.12.31</p> <p>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p> <p>라. 개선계획 변경내용</p> <p>1) 토지 이용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면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285</td> <td style="text-align: center;">9,28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거용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979</td> <td style="text-align: center;">5,953</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2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택 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5,979</td> <td style="text-align: center;">5,953</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26</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공시설 용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6</td> <td style="text-align: center;">3,332</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2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 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2,826</td> <td style="text-align: center;">2,856</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3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480</td> <td style="text-align: center;">476</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4</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9,285	9,285	-		주거용지	소 계	5,979	5,953	감26		택 지	5,979	5,953	감26		공공시설 용지	소 계	3,306	3,332	증26		도 로	2,826	2,856	증30		공공공지	480	476	감4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9,285	9,285	-																																							
주거용지	소 계	5,979	5,953	감26																																							
	택 지	5,979	5,953	감26																																							
공공시설 용지	소 계	3,306	3,332	증26																																							
	도 로	2,826	2,856	증30																																							
	공공공지	480	476	감4																																							
<p>2)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 공공시설 정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소로 3-1호선의 일부구간 계획선 변경(세부조서 변경없음.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도면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 공공공지 : 계획선 변경 없는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시설의 세 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 (㎡)</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791-1049, 791-1050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480</td> <td style="text-align: center;">47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791-1049, 791-1050일대	480	476	4	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791-1049, 791-1050일대	480	476	4	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4) 건축물의 개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계재생략)
- 5) 산사태 침수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6) 화장실 탁아소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 7)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8)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강북구고시제2003-1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형도면 작성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제5호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 가. 결정취지 : 주택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대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 신설
 - 시설명 : 공공공지
 - 위치 : 강북구 수유5동 392-119
 - 면적

- 변경 : 증)203m²
- 변경후 : 203m²

다.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강북구고시제2003-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강북한솔아파트)
- 2. 사업주체 : 강북한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허광욱 (서울시 강북구 번동 148-39호) 강북한솔제1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성운 (서울시 도봉구 창동 10번지) 한솔건설(주) 대표이사 강부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4호)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 강북구 번동 155번지외 38필지
 - 나. 대지면적 : 11,259.00m²
 - 다. 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 4개동 22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2003. 3. ~ 2005. 5.
- 5. 사업계획승인내역
 - 가. 대지면적 : 11,259.00m²
 - 나. 건축면적 : 2,045.28m² (건폐율 : 18.17%)
 - 다. 연면적 : 29,843.54m² (용적률 : 220.57%)
- 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법이 정한 사항.

7. 기타 및 도서 : 강북구청 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고시제2003-1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2-51호(2002. 10. 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03-42호(2003.2.10)로 열람공고한 “도봉실버센타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토목하수과(☎ 901-5405~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방학동 444-37~444-1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로개설 도봉실버센타진입도로개설공사
- 규모 : 폭 6m, 연장 17m
- 시설결정고시 : 도봉구고시제2002-51호 (2002.10. 5)
- 지적고시 : 도봉구고시 제2002-51호 (2002.10. 5)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3.12.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도봉구청(토목하수과)에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하수과(☎ 901-54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도봉실버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봉구 방학동 444-66	전	46	46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32-59	이향국			
2	도봉구 방학동 산61-30	임	7	7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46	전주이씨임녕대군파오산 군계종중			
3	도봉구 방학동 산61-29	임	39	39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46	전주이씨임녕대군파오산 군계종중			
4	도봉구 방학동 산61-31	임	27	27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46	전주이씨임녕대군파오산 군계종중			

물 건 조 서

○사업명 : 도봉실버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봉구 방학동 산 61-31	화원	비닐/외파이프 유리/샷시	4㎡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54-11 은혜빌라 302호	최웅진			
		영업권	진영화원	1식					
2	도봉구 방학동 444-66	담장	양철판/목재	1식	도봉구 창4동 815 현대아파트 2차 206-501	이미희			
			철망/철재	1식					

⊙은평구고시제2003-8호

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따른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3호(2003. 3. 5)로 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재개발구역 명칭 : 수색제2-2주택 재개발구역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산 31-3번지 일대

다. 면적 : 11,121㎡

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면 : 생략(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

⊙은평구고시제2003-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283(1985. 4.2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353호(1985. 5.29)로 지형도면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제 2003-54호(2003. 2.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공람공고한 『진관내동 524-4~진관내동 524-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건설교통국 하수과(☎ 350-1415, 16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524-4 ~ 524- 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진관내동 524-4 ~ 진관내동 524-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폭8m, 연장27m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 200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따로붙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따로붙임)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물 건 조 서

○사업명 : 진관내동 524-4 ~ 진관내동 524-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공부상 면적(㎡)	저촉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진관내동 524-2	세멘트벽조 1층	145.95	22	점포, 창고	이경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18-1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진관내동 524-4 ~ 진관내동 524-2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상호	용도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진관내동 524-2	영업권	네온간판 현미사	간판영업	1식	이종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524-2	

◎마포구고시제2003-16호

용강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02호(1999. 4. 22)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1999. 5.19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0-9호(2000. 2.15)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1호(2003. 1.25)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용강주택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재개발법 제26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마포구 성산동 275-3, ☎ 330-2963)와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용강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83번지 및 대흥동 746번지 일대, 23,069㎡
-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15-21
- 라.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 개월
- 마. 시행인가연월일 : 2000. 2.15
- 바.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대표 조합장 박현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31-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실음생략)
- 아.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또는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분 : 택지1
 - 대지면적 : 20,437㎡
 - 건폐율 : 16.53%
 - 용적율 : 215.89%
 - 층수 : 지하 2층, 지상18층
 - 주된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실음생략)
- 차. 사업시행변경사유 및 내용
 - 1) 변경사유 : 구역변경결정에 따른 변경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 2) 변경인가내역
 - 사업시행면적 변경(23,114㎡→23,069㎡)
 - 조경계획, 토목옹벽 및 우수관로계획 변경
 - 기타 경미한 전기·설비시설 변경 등.

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 가. 지구의 명칭 : 상암2주거환경개선지구
- 나. 위치 및 면적 : 마포구 상암동 20번지 일대 169,556㎡
- 다. 사업시행기간 : '92. 1.29~2003.12.31
- 라.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마.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안) 내용 : 지구내 개선계획 일부도로(소로3-40 구간) 및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의 변경(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게재생략)
- 바. 변경내용

◎마포구고시제2003-17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90.10.19)로 지구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2-26호('92. 1.29)로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고시된 상암2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및 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69,556	169,556	100.0	100.0			
택 지	소 계	119,573	119,824	70.5	70.6			
	단 독 주 택	113,333	113,594	66.8	66.9			
	근린생활시설용지							
	연 립 주 택	3,085	3,085	1.8	1.8			
	근린공공시설용지	1,481	1,481	0.9	0.9			
	A.P.T 형 공장	1,674	1,674	1.0	1.0			
공 공 시설	소 계	49,983	49,722	29.5	29.4			
	공 원	1,519	1,519	0.9	0.9			
	녹 지	796	796	0.5	0.5			
	도 로	47,668	47,407	28.1	28			
○도로결정조서								
구 분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정	대로	3	30	25	607	산4-186	155-4	
“	소로	2	1	8	253	28-107	34-47	
결정	“	2	2	“	409	32-2	11-21	
기정	“	2	3	“	184	1533-1	28-87	
결정	“	2	4	“	106	36-28	37-1	
“	“	2	5	“	124	14-16	16-7	
“	“	2	6	“	102	21-10	14-45	
기정	“	2	7	“	245	21-10	2-222	
기정	“	3	1	6	369	1533	1258	
결정	“	3	2	“	197	2-311	21-3	
“	“	3	3	“	109	5-6	2-229	

구 분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결정	“	3	4	“	111	6-7	16-3	
“	“	3	5	“	91	42-21	41-16	
“	“	3	6	“	101	33-26	34-35	
“	“	3	7	“	52	20-1	18-10	
결정	소로	3	8	6	20	2-142	33-1	
“	“	“	9	“	159	2-212	2-213	
“	“	“	10	“	73	29-19	28-30	
“	“	“	11	“	50	2-111	2-98	
기정	“	“	12	“	152	34-24	34-24	
결정	소로	3	14	6	244	산4-84	산4-84	
“	“	“	15	4	65	4-1	2-36	
“	“	“	16	“	66	2-68	2-37	
“	“	“	17	“	59	5-1	2-46	
“	“	“	18	“	50	2-77	2-93	
“	“	“	19	“	226	2-112	2-191	
“	“	“	20	“	268	2-193	2-151	
“	“	“	21	“	67	2-173	2-206	
결정	소로	3	25	4	153	28-30	산4-11	
결정	“	“	26	“	57	8-3	8-2	
“	“	“	27	“	54	11-7	12-16	
“	“	“	28	“	55	11-6	12-11	
“	“	“	29	“	108	12-4	12-31	
“	“	“	30	“	62	14-11	14-9	
“	“	“	31	“	71	41-19	42-14	
“	“	“	32	“	108	41-44	36-16	
“	“	“	33	“	44	36-15	41-6	
“	“	“	34	“	50	33-2	35-1	
“	“	“	35	“	104	34-34	34-35	
“	“	“	36	“	81	32-8	31	

구 분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결정	소로	3	37	4	126	27-26	27-38	
결정	“	“	39	“	41	34-27	34-26	
기정 변경	“	“	40	“	41	34-52	34-15	폐지
결정	소로	3	41	4	52	28-12	28-9	
결정	소로	3	42	4	120	산4-159	34-78	
결정	소로	3	43	4	18	28-125	산4-111	
결정	소로	3	44	4	27	28-88	산4-122	
결정	소로	3	45	4	150	28-26	28-121	
결정	소로	3	46	4	95	산4-42	산4-178	
결정	소로	3	49	4	30	28-249	28-249	
결정	소로	3	50	4	70	산3-2	산3-2	
결정	소로	3	51	4	74	산4-80	산3-2	
결정	소로	3	52	4	6	산4-170	28-123	
결정	소로	3	53	4	38	28-35	28-11	
결정	소로	3	54	4	28	28-61	28-39	
“	“	“	55	4	22	2-152	1484	

○토지조서 별지
가. 소로3-40구간

연번	지 번	지목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면적 (㎡)	소유자	비고
1	상암동 34-68	임	도시지역	도로	102	마포구	폐지
2	상암동 34-73	대	도시지역	도로	133	이금선의 2인	폐지
3	상암동 34-65	대	도시지역	도로	14	마포구	폐지
4	상암동 34-71	공	도시지역	공원,도로	12	마포구	폐지
	합 계				261		

나. 상암동 2-311호 도로구간							
연번	지 번	지목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면적 (㎡)	소유자	비고
1	상암동 2-311	대	도시지역	도로	207	최순희외 1인	폐지
2	상암동 23-7	대	도시지역	도로	39	김말여	폐지
3	상암동 2-314	대	도시지역	도로	1	김영희	폐지
4	상암동 2-268	대	도시지역	도로	19	염재영	폐지
합 계					266		

다. 상암동 34-19호 공원							
연번	지 번	지목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면적 (㎡)	소유자	비고
1	상암동 34-19	공	도시지역	공원	133	송영표	폐지
2	상암동 34-70	공	도시지역	공원	42	마포구	폐지
3	상암동 34-71	공	도시지역	공원,도로	104	마포구	폐지
합 계					279		

<p>◎양천구고시제2003-7호 민영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1. 양천구 신정동 935-1호외 2필지상 우성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 서병후) 및 (주)힐탑건설(대표이사:유종선)가 시행하는 민영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제33</p>	<p>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양 천 구 청 장</p> <p>가. 사업명 : 우성연립 재건축주택 사업 나. 공동사업주체</p>
--	---

- 성명 : 우성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조
합장 서병후
- 주소 : 양천구 신정동 935-12
- 성명 : (주)힐탑건설 대표이사 유종선
- 주소 : 송파구 방이동 108-16호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935-1호외 2필
지상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
지구, 공항고도지구
- 대지면적 : 2,891㎡
- 연면적 : 11,604.6783㎡
- 용적률 : 292.97%
- 건축면적 : 670.914㎡
- 건폐율 : 23.21%
- 규모 : 지하1층, 지상14층 1개동 84
세대 및 부대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3. 3~2004. 5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구로구고시제2003-1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

1. 우리구 오류1동 4-82 ~ 오류1동 3-37
외 2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
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95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
면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420	오류1동 4-82	오류1동 3-37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호 (69.01.18)	오류동 3의27 ~ 313의35간 선형변경(연장=80m)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420	오류1동 4-82	오류1동 3-37	일반 도로	-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 형도면승인 조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신도림동 400-6외 1필지	-	증)895	895	-	
신설	공공공지	오류2동 193-12호	-	증)200	200	-	
<p>나. 관계도서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 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p> <p>◎영등포구고시제2003-11호 도시계획사업(신길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7호(2003. 2. 28)로 도시계획시설(신길근린공원) 조 성계획 변경결정된 우리구 신길동 422-10일대 신길근린공원에 대하여</p>			<p>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신길동 422- 10 일대</p> <p>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신 길근린공원조성)</p> <p>다. 사업규모(변경내역) : 공원조성 19,782㎡</p>				
구분	도로(m ²)	광장(m ²)	구 민 체 육 센 타		녹지 및 기타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2,063.25	1,241.00	1,456.85	8,384.22	11,279.20		
변경	2,097.25	1,141.52	1,456.85	9,241.67	11,390.25		
증감	증34.00	감99.48	-	증857.45	증111.05		

라. 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정 : 인가일 ~ 2003.12.31

○변경 : 인가일 ~ 2004.12.31

마.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번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주소 : 생략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문의처 :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2670-3395~7)

◎서초구고시제2003-26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아파트재건축)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동명유로랜드재건축사업
2. 사업주체 : 동명유로랜드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이상기
삼전건설(주) 대표 윤석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초구 잠원동 34-1,27호
나. 대지면적 : 1,290.2㎡
다. 건축면적 : 465.29㎡
라. 건축 연면적 : 5,190.04㎡
마. 건설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아파트1동, 32세대
4. 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 : 사업주체,시공사 변경(동구종합주택건설(주) 대표 고태영→삼전건설(주) 대표 윤석영)
5. 사업시행기간 : 2002.12 ~ 2004. 5(예정)

◎서초구고시제2003-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3-2 외 6필지 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삼보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초삼보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윤양근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대
3. 시공자 :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초구 서초동 1473-2호 외 6필지
나. 대지면적 : 3,376.68㎡
다. 건축면적 : 934.13㎡
라. 연면적 : 10,949.15㎡
마. 건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1개동 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6. 의제처리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법 제26조 제5항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 및 승인고시 같음)
나. 도시계획법 제59조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다.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라.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마.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바.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7.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기정	소로	2류	8	국지 도로	458	1465-9	1460-1	일반 도로	기존 8m도로를 1m후퇴하여 1747-8에 면적45.68㎡을 부합
변경	소로	2류	8~9	국지 도로	458	1465-9	146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류	6	국지 도로	163	1463-4	1473-1	일반 도로	기존 6m도로를 2m후퇴하여 1747-11에 면적 66.14㎡을 부합
변경	소로	3류	6~8	국지 도로	163	1463-4	1473-1	일반 도로	

8. 기타

관계도면은 서초삼보연립재건축주택조합 및 서초구청 건축과(☎ 570-63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강남구고시제2003-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를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 허가구분 : 2003-수-3
- 점용 위치 : 수서동 85-4
- 점용기간 : 2003. 3. 6 ~ 3.20
- 면적 : 202㎡
- 점용 목적 : 지역난방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 점용료(수수료) : 12,400원(34,460원)
- 신청인
 - 주소 : 수서동 752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김 휘

◎강남구고시제2003-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8-2,4호 소재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 가.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나. 사업주체 : 영동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김기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8-2, 4호 영동연립 가-101호)

정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정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9번지)

2. 사업시행의 위치, 면적, 규모

- 가. 사업위치 : 강남구 논현동 108-2,4호 소재
- 나. 대지면적 : 1,277.9㎡
- 다. 사업규모 : 아파트1개동 지하1/지상7층 32세대

- 라. 건축면적 : 514.41㎡
- 바. 건축연면적 : 4,028.08㎡
- 3. 사업시행기간 : 2003. 3. ~ 2004. 3.
- 4.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5.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보관

-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 6.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보관

◎강남구고시제2003-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동법
시행령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
인(동아1차아파트재건축)
- 2. 사업주체 : 동아1차아파트재건축 주택
조합 조합장 유건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32-1
용인수지 벽산타운 209-602)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고헌봉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
568-1번지)
- 3. 사업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 강남구 대치동 902번지 소재
- 나. 대지면적 : 17,662.30㎡
- 다. 연면적 : 72,318.86㎡
- 라. 규모 : 지하2, 지상 18~22층 아파트
4개동 2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변경사항 : 동명칭(101,102동→102,101
동), 주차관리실 위치, 저수조 용량,
상가내부 위치, 지하주차장 슬라브(일
반 슬 라 브 → 데 크 슬 라 브)
변경, 35M도로변과 단기간 담장 설치
없애고 식재처리 등

구 공 고

◎종로구공고 제2003-90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등록되었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종 로 구 청 장

- 가. 등록일자 : 2003. 3. 8.
-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 내역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3종
 - 등록번호 : 종로03-27-3-03
 - 상호 : 신광설비
 - 대표자 : 전충용
 - 주민등록번호 : 440507-*****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계동 52-1
 - 등록일 : 2003. 3. 8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2종
 - 등록번호 : 종로03-27-2-01
 - 상호 : 안전가스설비공사
 - 대표자 : 변영길
 - 주민등록번호 : 561008-*****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58번지
 - 등록일 : 2003. 3. 8

 - 업종(등록번호)
 - 조경식재공사업(종로03-18-01)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로03-19-01)
 - 상호 : (주)영신조경
 - 대표자 : 황준형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09983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6-1
 - 등록일 : 2003. 3. 8

◎종로구공고 제2003-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직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를위한공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3호(2002.12.26)로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3-9호(2003. 1.15)로 도시계획사업(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92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 62조에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종 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사직근린공원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48일대
3. 면적 : 168,099.8㎡
4.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 조서 : 별항
5.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면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청 공원 녹지과(☎ 731-145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가. 총괄표(위 치 : 종로구 사직동 1-4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168,099.8	41,339.0	21동	3,178.69	7,693.56	62	168,099.8	43,955.0	19동	4,460.0	14,963.0	49	증 2,616㎡ 감 2동, 감 13기
기 반 시 설	소 계	15,112.0	15,112.0				17,642.0	14,942.0 (2,700.0)					감 170㎡ ()안은 도시계획도로
	도 로	7,712.0	7,712.0				10,242.0	7,542.0 (2,700.0)					감 170㎡ ()안은 도시계획도로
	광 장	7,400.0	7,400.0				7,400.0	7,400.0					
조경 시설	5,110.0	5,110.0				4	5,110.0	5,110.0				2	감 2기
휴양 시설	1,935.0	1,935.0	2동	149.0	228.0		985.0	985.0	1동	79.0	158.0	1	감 950㎡, 감 1동, 증 1기
유희 시설	700.0	700.0				2	700.0	700.0				2	
운동 시설	4,811.0	4,811.0	2동	122.7	122.7	29	8,262.0	8,262.0	1동	1,179.01	6,756.14	17	증 3,451㎡, 감 1동, 감 12기, 오기정정
교양 시설	16,170.0	13,289.0	10동	2,645.56	7,081.43	3	16,170.0	13,289.0	10동	2,645.56	7,081.43	3	
편익 시설	162.0	162.0	5동	110.23	110.23	3	632.0	447.0	5동	405.23	816.23	3	증 285㎡
관리 시설	220.0	220.0	2동	151.2	151.2	21	220.0	220.0	2동	151.2	151.2	21	
녹지 및 기타	123,879.8						118,378.8						감 5,501㎡

나. 시설조서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68,099.8	41,339.0		21동	3,178.69	7,692.86	62			168,099.8	43,955.0		19동	4,460.0	14,963.0	49		
기 반 시 설	소계		15,112	15,112								17,642	14,942 (2,700)						감 170㎡ ()안은 도시계획도로	
	도로		전지역	7,712	7,712						전지역	10,242	7,542 (2,700)						감 170㎡	
	진입광장	가	2개소	2,900	2,900					가	2개소	2,900	2,900							
	진입광장1	가-1	사직동1-48	(1,600)	(1,600)					가-1	사직동1-48	(1,600)	(1,600)							
	진입광장2	가-2	사직동1-48	(1,300)	(1,300)					가-2	사직동1-48	(1,300)	(1,300)							
	다목적광장	나	사직동1-48	4,500	4,500					나	사직동1-48	4,500	4,500							
조 경 시 설	소계		5,110	5,110					4		5,110	5,110						2	감 2기	
	장식화단	다	4개소	5,110	5,110					다	4개소	5,110	5,110							
	장식화단1	다-1	사직동1-48	(2,500)	(2,500)					다-1	사직동1-48	(2,500)	(2,500)							
	장식화단2	다-2	사직동1-48	(1,760)	(1,760)					다-2	사직동1-48	(1,760)	(1,760)							
	장식화단3	다-3	사직동1-48	(450)	(450)					다-3	사직동1-48	(450)	(450)							
	장식화단4	다-4	사직동1-48	(400)	(400)					다-4	사직동1-48	(400)	(400)							
	파고라	①	3개소						4	①	2개소								2	감 2기
	파고라	①-1	조경휴게소내			목재			(1)	①-1	조경휴게소내			목재					(1)	
	파고라	①-2	조경휴게소내			목재			(2)											폐지
	파고라	①-3	체력단련장내			목재			(1)	①-2	체력단련장내			목재					(1)	
휴 양 시 설	소계		1,935	1,935		2동	149.0	228.0			985	985		1동	79.0	158.0	1	감 950㎡, 감 1동, 증 1기		
	경로당	1	사직동산1-13	160	160	연외조	1동2층	79.0	158.0	1	사직동산1-13	160	160	연외조	1동2층	79.0	158.0			
	조경휴게소	라	2개소	1,415	1,415					라	1개소	825	825					1	감 590㎡, 증 1기	
	조경휴게소	라-1	사직동산1-30	(825)	(825)					라-1	사직동산1-30	(825)	(825)					(1)		
	조경휴게소	라-2	사직동1-11	(590)	(590)															폐지
팔각정	2	사직동산1-48	360	360	목조, 외죽	1동	70.0	70.0											감 1동, 감 360㎡(폐지)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회 시 설	소계			700	700					2		700	700					2			
	어린이 놀이터	마	사직동 1-48	700	700					2	마	사직동1-48	700	700					2		
운 동 시 설	소 계			4,811	4,811		2동	122.7	122.7	29		8,262	8,262		1동	1,179.01	6,756.14	17	증3,451㎡, 감1동, 감12기, 오기정정		
	국공장	3	사직동 산1-1	1,800	1,800	철근 콘크리트	1동	89.7	89.7		2	사직동산1-1	2,565	2,565					증 765㎡, 감1동 (사우회관 폐지)		
	국공교습장	4	사직동 산1-11	600	600	조적조	1동	33.0	33.0										감600㎡, 감1동(폐지)		
	배드민턴장	바	2개소	726	726						바	2개소	864	864					증 138㎡		
	배드민턴장	바-1	사직동 산1-9	(336)	(336)						바-1	사직동산1-9	(336)	(336)						(2면)	
	배드민턴장	바-2	행촌동 산1-48	(390)	(390)															폐지	
	배드민턴장										바-2	행촌동산1-3	(528)	(528)						신설(2면)	
	체력단련장	사	3개소	1,685	1,685					29	사	2개소	1,007	1,007					17	감 678㎡, 오기정정	
	체력단련장	사-1	사직동 산1-1	(635)	(635)						(9)	사-1	사직동산1-1	(635)	(635)					(9)	
	체력단련장	사-2	행촌동 산1-3	(372)	(372)						(12)	사-2	행촌동산1-3	(372)	(372)					(8)	
체력단련장	사-3	사직동 산1-48	(380)	(380)						(8)									감380㎡ (폐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3	사직동 산1-48	3,826	3,826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지하2층 /지상3층	1,179.01	6,756.14		증3,826㎡, 증1동 (연면적 6,756.14㎡, 신설)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16,170	13,289		10동	2,645.56	7,081.43	3			16,170	13,289		10동	2,645.56	7,081.43	3		
교 양 시 설	종로도서관	5	사직동 1-48	3,300	1,030	철근 콘크리트	1동3층	1,030.0	3,427.0		4	사직동1-48	3,300	1,030	철근콘크 리트	1동3층	1,030.0	3,427.0		
	어린이 도서관	6	사직동 1-48	6,000	6,000	철근 콘크리트	2동3층	1,229.16	3,269.43		5	사직동1-48	6,000	6,000	철근콘크 리트	2동3층	1,229.16	3,269.43		
	사직단	7	사직동 1-28	5,600	5,600	목조외죽	1동	16.2	16.2		6	사직동1-28	5,600	5,600	목조외죽	1동	16.2	16.2		
	사직 단정문	8	사직동 1-48	80	80	목조외죽	1동	63.8	63.8		7	사직동1-48	80	80	목조외죽	1동	63.8	63.8		
	단군성전	9	사직동 1-50	800	189	목조외죽	3동	189.0	189.0		8	사직동1-50	800	189	목조외죽	3동	189.0	189.0		
	황학정	10	사직동 산1-1	120	120	목조외죽	1동	64.4	63.0		9	사직동산1-1	120	120	목조외죽	1동	64.4	63.0		
	안향정	11	사직동 1-48	100	100	목조외죽	1동	53.0	53.0		10	사직동1-48	100	100	목조외죽	1동	53.0	53.0		
	어머니 현장비	②	사직동 1-48	10	10	화강석				1	②	사직동1-48	10	10	화강석				1	

제 2468 호

시

포

2003. 3. 15. (토)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이울곡동상	㉓	사직동1-48	80	80	동.화강석				1	㉓	사직동1-48	80	80	동.화강석				1	
	신사임당 동상	㉔	사직동1-48	80	80	동.화강석				1	㉔	사직동1-48	80	80	동.화강석				1	
편 익 시 설	소 계			162	162		5동	110.23	110.23	3			632	447		5동	405.23	816.23	3	증 285㎡
	매 점	12	2개소	20	20		2동	11.2	11.2		11	2개소	20	20		2동	11.2	11.2		
	매 점1	12-1	사직동1-48	(10)	(10)	알미늄사시	(1동)	(5.6)	(5.6)		11-1	사직동1-48	(10)	(10)	알미늄사시	(1동)	(5.6)	(5.6)		
	매 점2	12-2	사직동1-48	(10)	(10)	알미늄사시	(1동)	(5.6)	(5.6)		11-2	사직동1-48	(10)	(10)	알미늄사시	(1동)	(5.6)	(5.6)		
	화 장 실	13	3개소	130	130		3동	99.03	99.03		12	2개소	100	100		2동	79.03	79.03		감 30㎡, 감1동
	화장실1	13-1	사직동1-48	(60)	(60)	조적조	(1동)	(45)	(45)		12-1	사직동1-48	(60)	(60)	조적조	(1동)	(45)	(45)		
	화장실2	13-2	사직동1-48	(40)	(40)	조적,외죽	(1동)	(34.03)	(34.03)		12-2	사직동1-48	(40)	(40)	조적,외죽	(1동)	(34.03)	(34.03)		
	화장실3	13-3	조경휴게소내	(30)	(30)	조적조	(1동)	(20)	(20)											(폐지)
	구공 전수관										13	사직동산1-1	500	315	철근 및 철골조	1동/ 지하1층,지상2층	315	726		증1동, 증315㎡ (연면적 726㎡, 신설)
	음수대	아	2개소	4	4					2	아	2개소	4	4					2	
	음수대1	아-1	사직동1-48	(2)	(2)	스텐레스				(1)	아-1	사직동1-48	(2)	(2)	스텐레스				(1)	
	음수대2	아-2	사직동-48	(2)	(2)	스텐레스				(1)	아-2	사직동-48	(2)	(2)	스텐레스				(1)	
약수터	자	다목적광장내	5	5						자	다목적광장내	5	5							
공중전화	㉕	사직동1-48	3	3	철재,유리				1	㉕	사직동1-48	3	3	철재,유리				1		
소 계			220	220		2동	151.2	151.2	21			220	220		2동	151.2	151.2	21		
관리사무소	14	사직동1-48	150	150	조적조	1동	100.0	100.0		14	사직동1-48	150	150	조적조	1동	100.0	100.0			
창고	15	사직동1-48	70	70	조적조	1동	51.2	51.2		15	사직동1-48	70	70	조적조	1동	51.2	51.2			
종합안내판	㉖	진입광장내			목재,외죽				1	㉗	진입광장내			목재,외죽				1		
공원등		공원내			철재				20		공원내			철재				20		
녹지 및 기타			123,879.8									118,378.8							감 5,501㎡	

다. 도로 조서

1) 공원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변경					270	2,700				
신설	소로	소 계			270	2,700				
신설		1	2	10	270	2,700	도시계획도로	사직산1-6	사직산1-41	

2)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314	7,712				
변경					1,229	7,542				
당초	소로	소 계			980	7,000				
		1	1	10	430	4,300	중앙도로	남측주택지	효자동경계	
		3	1	6	350	2,100	진입도로	중앙도로	서울시교육원	
		3	2	3	110	330	보행로	소로(3-1)	황학정	
		3	3	3	50	150	보행로	사직단복측	소로(3-1)	
		3	4	3	40	120	보행로	다목적광장	단군성전	

제 2468 호

시

단

2003. 3. 15. (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소 계			334	712					
변경		소 계			249	542					
당초		4	1	3	65	195	산책로	소 로(3-2)	소 로(1-1)		
당초		4	3	2	75	150	산책로	소 로(3-2)	체력단련장(사-1)		
변경		4	2	2	75	150	산책로	소 로(3-2)	체력단련장(사-1)	번호정정	
당초		4	4	2	47	94	산책로	체력단련장 (사-1)	사직 산1-1		
변경		4	3	2	47	94	산책로	체력단련장 (사-1)	사직 산1-1	번호정정	
당초		4	5	2	20	40	산책로	행촌 산1-3	행촌 산1-3		
변경		4	4	2	20	40	산책로	행촌 산1-3	행촌 산1-3	번호정정	
당초		4	6	1.5	42	63	연결로	소 로(3-1)	소 로(3-1)		
변경		4	5	1.5	42	63	연결로	소 로(3-1)	소 로(3-1)	번호정정	
당초		4	2	2	85	170	산책로	도시계획도로	사직 산1-48		
폐지		-	-	-	-	-	-	-	-	-	

제 2468 호

시

구

2003. 3. 15. (토)

◎중구공고 제2003-81호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구 청 장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내용

-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번호 : 95-서울-12-3
- 업체명 : (주)극동무공
- 소재지 : 중구 정동 1-11
- 대표자 : 최근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43795
- 신고수리일자 : 2003. 3. 5

◎중구공고 제2003-85호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구 청 장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번호 : 중구03-01-01
- 업체명 : (주)열린디자인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292-43
- 대표자 : 이치승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11897
- 등록일자 : 2003. 3.11

- 업종 : 철물공사업
- 등록번호 : 중구03-11-02
- 업체명 : (주)열린디자인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292-43

- 대표자 : 이치승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11897
- 등록일자 : 2003. 3.11

◎성동구공고 제2003-79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다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하였기에 등록말소 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 8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 업체명 : (주)한범
- 법인등록번호 : 110111-0203622
- 업종 : 지방관급공사업 성동98-9-1
- 대표자 : 최규인
- 소재지 : 성동구 용답동 22-1
- 말소사유 : 자진반납
- 말소일자 : 2003. 3. 6 등록말소

◎성동구공고 제2003-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1-112호 (2001.12.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02-83호(2002.10.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된 응봉동193-76~205-21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

<p>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3월 15일 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193-76~205-21</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 응봉동193-76~205-21간 도로개설공사 <p>다. 사업시행 규모 : 폭4m, 연장106m</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까지</p> <p>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p> <p>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p> <p>아. 열람장소 : 성동구청 토목과(☎ 2290-7405)</p> <p>자. 열람기간 : 2003. 3.16~2003. 3.30</p>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	성동구 응봉동 205-29	구거	43	43	성동구청				
2	성동구 응봉동 191-25	대지	14	14	염귀열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1-20			
					이광복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1-11	근저당권	(주)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14(대흥동지점)
3	성동구 응봉동 193-233	전	187	187	서울특별시교육감				
4	성동구 응봉동 205-28	구거	14	14	성동구청				
5	성동구 응봉동 205-5	전	2,520	79	서울특별시교육감				
6	성동구 응봉동 205-21	구거	183	147	성동구청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	성동구 응봉동 205-29, 191-25, 193-233	담장	벽돌		1식	이광복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1-11			
		수목	은행나무1 기타4		5그루					
2	성동구 응봉동 193-233	담장	벽돌		1식	최순재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1-10			
3	성동구 응봉동 193-233	담장	벽돌		1식	문태식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1-9			
4	성동구 응봉동 193-233, 205-21	대문	철재		1식	임선용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2-10			
		담장	벽돌		1식					
		수목	향나무1 기타2		3그루					
		정화조			1식					

Ⓢ성동구공고 제2003-8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소재지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계획을 공시송달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당사자 및 처분내용

처분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종 및 등록번호		
선화건설(주)	김 현 영	상왕십리14-19	기계설비:성동97-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이 확인된 때	등록말소
(주)일송엔지니어링	김 명 환	용답227-1(3층)	설비 : 97서울12-4		
(주)부영미방	정 영 희	마장767-42 (남지빌딩401)	미방 : 성동98-03-2		
금우건설(주)	박 춘 호	성수2가278-17	건축물조립 : 94-서울-20-9		
(주)진기개발	황 원 경	성수2가315-71	의장 : 서울89-01-18		
정진기업사	정 세 근	마장동521-10(401)	토공 : 경북-02-92 철콘 : 경북-10-73		
한미모노산업(주)	안 일 환	용답동67-6	미방 : 서울-03-36		
호준건설(주)	장 철 건	마장동474-1 (창원빌딩515)	토공 : 94서울-02-216 철콘 : 94서울-10-296		
(주)동양위열	우 만 형	옥수동285-73	의장 : 91-서울-01-221		
(주)정진프라자	최 덕 선	마장동521-10 대하B/D505	토공 : 94서울-02-21 보링그라우딩:94-서울-14-1		
(주)강우금속	임 덕 빈	성수동1가655-2	철물 : 성동97-11-3		
(주)동영	김 갑 진	성수동2가300-73	의장 : 95-서울-01-15		
거산기공(주)	이 준 석	용답동5-3	철물 : 서울92-11-105		
(주)신성진흥	염 동 찬	하왕십리301-5	상허수도 : 13-13		
(주)장우기설	김 중 열	상왕십리14-20(501)	설비 : 97-서울-12-41		
(주)창일내장건설	박 승 도	금호4가990-2 세보B/D1층	철물 : 96서울 11-9		
(주)아트원	공 광 식	도선 14(210)	의장 : 강북97-01-2		
덕일건설(주)	김 진 갑	행당 298-9	설비 : 서울12-343 철콘 : 서울10-142		

- 2.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1호
- 3. 청문
 - 기관명 : 성동구청 토목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6
 - 기간 : 2003. 4. 7~4. 9(14:00~17:00)
 - 장소 : 성동구청토목과(성동구청 본관 3층)
- 4. 공고기간 : 관보게재일로 부터 14일간
- 5. 청문시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대표자:신분증지참, 대리인:위임장, 인감지참)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 (☎ 02-2290-7405)

◎성동구공고 제2003-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 열람

- 1. 건설부고시 제768호('64. 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1997-18호('97.3.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행당동 313-13~317-32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

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3-13~317-32간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의명칭 : 행당동313-13~317-3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폭8m, 연장 7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04. 2.28까지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아. 열람장소 : 성동구청 토목과(☎ 2290-7405~7)

자. 열람기간 : 2003. 3.15.~2003. 3.29.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동구 행당2동	313-16	대	30.0	30.0	성동구 행당2동 328-1 행당한진타운 121-1002호	김진숙				
2	성동구 행당2동	313-97	대	20.0	20.0	성동구 행당2동 313-8	서왕모	근저당권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시설관리공단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건 축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비고
				층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동구 행당2동 313-9	스래트, 시멘트블럭조	공장	1층 아자리아나무 수도계량기	32 1구루 1개	성동구 행당2동 328-1 행당한진타운 121-1002호	김진숙				

☉광진구공고 제2003-64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인가를 위한열람

1. 광진구고시제2003-3호(2003. 1.30)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중곡동250번지2호 토지(건물포함)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9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하수과(☎ 450-14215~7)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중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같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p> <p>가.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 중곡동 250번지 2호 ○사업의 종류 및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확장) - 사업의 명칭 : 중곡빗물펌프장 확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규모 : 건물증축, 펌프증설, 흡수정확장 각 1식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간 <p>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p> <p>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하수과(☎ 450-1415~7)</p>
---	---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고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중곡동 250-2	대	278.9	278.9	윤명자	광진구 중곡동 235-25	-	-	-	

- 건물조서
 - 해당사항없음(기준무허가 건물포함)

◎광진구공고 제2003-72호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

- 상호 : 영진종합설비
- 대표자 : 이명득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4-8번지
-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등록번호 : 광진-03-27-3-0002
- 등록일자 : 2003년 2월 28일

◎광진구공고 제2003-87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인가를 위한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30(2002. 6.18)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제2002-30호(2002. 8.23)로 지형 도면 승인된 광진구 화양동 110-33번지 주변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건물·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1425)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열람하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사업내용

○사업시행지 : 광진구 화양동 110-33
주변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규모 : 1,968㎡(잔여지 468㎡포함)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용 또는 수요할 토지조서

- 1.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7
 -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권리종류 및 내역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광진구 화양동	110-3 3, 67	대지	1,248	1,248	대지	강태남	화양동 110-33 느티연립A동 1층 1-1호				110-33
							이태웅	화양동 110-33 느티연립A동 1층 3-1호	(주)한국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개포동지원센터지점)	근저당권	
									엄명용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145	근저당권	
							윤대혁	성북구 종암동 79-307	아현1동 새마을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378-7	근저당권	
							김용석	동작구 본동 252-1	김창원	마포구 성산동446 시영아파트31-505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장향신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26동403호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전소유자 이호숙
							송귀례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에이동 201호	한국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자양동지점)	근저당권	
							김상열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에이동 2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권리종류 및 내역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유옥신	양천구 신정7동 325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1110-905	주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아현동지점)	근저당권	
							박윤희	서초구 반포동 719-24 302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 777	압류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남정희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대우 그랜드월드 아파트117				
							오창주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 북한산 시티아파트 144-804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전소유자 이태호
							이은주	화양동 67-3				
							조규오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206호				
							안춘자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7-2호	주우리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광화문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권태윤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광화문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권태윤
							박인례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8-2호	화양동 새마을금고	화양동 22-5	근저당권	
									화양동 새마을금고	화양동 22-5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권리종류 및 내역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박면희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209호				
							박하훈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801호				
							김춘하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비동 9-1호				
							안종균	성동구 금호동3가 298 3층	청량리신 용협동조합	동대문구 청량리동 654	근저당권	채무자 안관영
							김길웅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씨동 11-1호				
							김종용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8-3 양지빌라 비01호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 75 (뚝섬지점)	근저당권	
							박원학	중구 신당동 364-5	쥬우리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11-1 (청파동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전소유자 문성수
							김태철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씨동 211호				
							조금자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씨동 12-2호				
							김두환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 101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권리종류 및 내역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정숙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 102호	한국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자양동지점)	근저당권	
							김은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20-11	옹진농협 협동조합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20-11	근저당권	
							강평자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 14-1				
							김동찬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 301				
							노경범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302호	한국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성수동지점)	근저당권	
									주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100 (답십리지점)	근저당권	
									화양동 새마을금고	화양동 22-5	근저당권	
							전용만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13호				
							전기자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디동 2층 14-2호				
2	광진구 화양동	122	대지	155	155	대지	심현섭	화양동122				
3	광진구 화양동	122-2	대지	177	177	대지	추안식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0-8				지103호
							이서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43-4 다솜금호 아파트1711	아현1동 새마을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378-7	근저당권	지102호
							유희승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9-11(301)				지101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권리종류 및 내역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선복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54 현대아파트 703-304				1층101호
							박성호	서울 은평구 응암동 86-18				2층201호
4	광진구 화양동	122-4	대지	73	73	대지	김정수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1-91				
							성낙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504-6				
							송희민	서울 중랑구상봉동 122-63				
5	광진구 화양동	122-8	대지	182	182	대지	박승규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516				122-3
6	광진구 화양동	132-103	종교 용지	75	75	종교 용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화양동132-3	동부농협 협동조합	중랑구 상봉동 115-9	근저당	132-3
7	광진구 화양동	132-104	대지	44	44	대지	황만재	화양동132-3	의왕농협 협동조합	의왕시 오전동 328(부곡지점)	가압류	132-8
8	광진구 화양동	132-105	대지	14	14	대지	강귀정	화양동132-3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132-89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조사

- 1.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7
 - 3.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물건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면적(㎡)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1층 1-1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69	강태남	화양동110-33 느티연립A동 1층1-1호				110-33
			주택 (창고)	"	15.07						
2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1층 3-1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이태용	화양동110-33 느티연립A동 1층3-1호	(주)한국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개포동지원센 터지점)	근저당권	
			주택 (창고)	"	15.07			업명용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145	근저당권	
3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1층 4-1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윤대혁	성북구 종암동 79-307	아현1동 새마을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378-7	근저당권	
			주택 (창고)	"	15.07						
4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1층 5-1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김용석	동작구 본동 252-1	김창원	마포구 성산동446 시영아파트31-505	소유권이 전 청구권가 등기	
			주택 (창고)	"	13.45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면적(mi)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5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1-2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69	장향신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26동403호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전소유자 이호숙
6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2-1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69	송귀례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에이동 201호	한국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자양동지점)	근저당권	
7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2-2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69	김상열	화양동 110-33 느티연립 에이동 202호				
8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3-2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유옥신	양천구 신정7동 325 목동신 시가지 아파트 1110-905	(주)우리 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아현동지점)	근저당권	
9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4-2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박윤희	서초구 반포동 719-24 302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 777	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면적(m ²)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0	광진구 화양동	110-67 느티연립A동 2층5-2호	주택	시멘트 벽돌조	73.12	남정희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대우 그랜드월드 아파트117				
			주택 (창고)	"	13.45						
11	광진구 화양동	122	주택	시멘트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	257.22	심현섭	화양동 122				
12	관진구 화양동	122-2 제지하층 제101호	주택	연와조	27.38	유혜승	강남구 대치동 939-11, 301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신정숙
13	관진구 화양동	122-2 제지하층 제102호	주택	연와조	27.26	이서호	구로구 구로동 43-4 다솔금호 아파트 1711호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신정숙
14	관진구 화양동	122-2 제지하층 제103호	주택	연와조	26.45	추안식	금천구 시흥동 900-8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신정숙
15	관진구 화양동	122-2 제1층 제101호	주택	연와조	76.47	선복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54 현대아파트 703-304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신정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면적(m ²)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6	광진구 화양동	122-2 제2층 제201호	주택	연와조	76.47	박성호	서울 은평구 응암동 86-18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근저당권	채무자 신청숙
			화장실	시멘트	2						
			창고	시멘트	3						
17	광진구 화양동	122-8	주택	연와조 경슬라브위 기외지붕	232.41	박승규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516				
			장독대	시멘트	7						
			창고	시멘트	4						
18	광진구 화양동	132-103	주택	벽돌조	63	대한예 수교 장로회 화양동 교회	화양동132-3			132-3	
19	광진구 화양동	132-3	주택	벽돌조	54	대한예 수교 장로회 화양동 교회	화양동132-3				
20	광진구 화양동	132-105	보일러실	시멘트	5	강귀정	화양동132-3			132-8	
21	광진구 화양동	132-8	주택	시멘트	17	황만재	화양동132-3				
22	광진구 화양동	132-104	주택	시멘트	22	황만재	화양동132-3			132-89	

◎광진구공고 제2003-92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가. 전문건설업 등록 내역

-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번호 : 광진-03-12-02
- 상호 : 성신설비(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701129
- 대표자 : 우상욱
- 소재지(전화번호) : 광진구 구의동 218-12 다성리버텔 305호(☎ 3436-4230)
- 등록일자 : 2003. 3.10

◎광진구공고 제2003-93호

전문건설업등록취소

건설업 면허를 자진반납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

○등록취소 내역

- 업종 : 미장,방수공사업
- 등록번호 : 광진-99-03-06
- 상호 : (주)디앤에스건설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86726
- 소재지 : 광진구 자양동 665-10
- 대표자 : 김승호
- 취소사유 : 자진반납
- 취소일자 : 2003. 3.10.

◎동대문구공고 제2003-1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

1. 서울시 고시 제235호('78. 5.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173호('80. 5.22)로 지적승인된 "청량리동 328~55간 도로개설공사(1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2.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2127-4813) 및 건설관리과(☎ 2127-440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 공고 기간내 열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동대문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325 ~ 청량리동328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명 : 청량리동 328~55간 도로개설공사(1차)
- 라.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 B=10m, L=15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04.12.3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아.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
(☎ 2127-4813), 건설관리과 (☎ 2127-4403)로 문의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청량리동 342	대	34.4	동대문구 청량리동 342	홍옥희				
2	청량리동 343-1	대	3.6	동대문구 청량리동235-1 미주아파트 7동101호	김창숙				
				동대문구 청량리동235-1 미주아파트 8동503호	이영희				
				동대문구 청량리동235-1 미주아파트 7동102호	이영미				
3	청량리동 326	대	8.3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09-3	성용숙				
4	청량리동 325-1	대	10.6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159	김정자				
5	청량리동 328-1	대	38.8	용인시 죽전동 172-1 용인죽전동부아파트 106-405	석승원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청량리지점)	근저당권	
				동대문구 청량리동 328	석승주				
				노원구 월계동18 그랑빌아파트 105-2606	석승민				
				노원구 월계동18 그랑빌아파트 108-1603	석승태				

□ 물 건 조 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규격 및 구 조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청량리동 342	건물	스라브/벽돌	38.6	동대문구 청량리동 342	홍옥희				
		계량기	한전	1식						
2	청량리동 325외1필	건물1층	스라브/철콘	9.4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09-3	성용숙				
		건물2층	스라브/철콘	9.4						
3	청량리동 326외1필	건물1층	스라브/철콘	12.1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109	김정자				
		건물2층	스라브/철콘	12.1						
		건물3층	스라브/철콘	12.1						
		건물4층	스라브/철콘	12.1						
4	청량리동 328	건 물	기와/블록	41.7	용인시 죽전동172-1 용인죽전동부아파트 106-405	석승원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청량리지점)	근저당권	
					동대문구 청량리동 328	석승주				
		계량기	한전	1식	노원구 월계동18 그랑빌아파트 105-2606	석승민				
					노원구 월계동18 그랑빌아파트 108-1603	석승태				

□ 영업권조서

연번	지번	업 소 명	업 종	대 표 자	건 물 주	전 화 번 호	비고
1	청량리동 342	수림찻집	일반음식점	이영림	홍옥희	966-5136	
2		동부상회	수퍼	홍옥희		964-1917	
3	청량리동	한빛부동산	중개업	조명환	성용숙	963-3999	
4	325외1필지	진일철학원	철학상담	김정호		967-7642	
5	청량리동 326외1필지	SK텔레콤· 북권방	대리점	최창배	김정자	965-6390	

◎중랑구공고 제2003-113호

도시계획사업(마을마당)실시계획인가에
따른공람

1.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03-11호(2003. 2. 4)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내동 도시계획사업(마을마당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기타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중랑구 신내동 522-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마을마당조성)시행

다. 면적 또는 규모 : 별첨 물건조서 참조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일로 부터 200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물건조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03. 3.30.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 490-3396)

토 지 조 서(신내동)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신내동 522-1	대지	1,344	576.84	서울시 천주교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				공유지분
2	신내동 522-10	도로	92	92	중랑구					
3	신내동 537-5	대지	97	97	이재이	신내동537-5				
4	신내동 537-6	대지	38	38	이만금	양천 신월540-16 중원메션301호				
5	신내동 537-20	대지	146	146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호				
6	신내동 540	전	77	14	김수명	신내동479 중앙하이츠A 1-412호				

□ 건물조서(신내동)

연번	지 번	종류 및 용도	건물 면적	수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1	신내동 537-5	건물		73	정혜화	동대문 이문64-1 쌍용A 116-1008				
		창고		1	정혜화	동대문 이문64-1 쌍용A 116-1008				
2	신내동 537-6	건물		35	이만금	양천 신월540-16 중원맨션301				
		화장실		1	이만금	양천 신월540-16 중원맨션301				
3	신내동 537-20	건물		8	장세용	신내동537-19				
		건물		3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창고		2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창고		3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보일러실		6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창고		17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건물		51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건물		53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창고		7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화장실		3	이병하	노원 월계18 그랑빌A 109-2404				

◎중랑구공고 제2003-119호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랑 구 청 장

○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 수리 내역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신고일자	수리일자	차기신고일	비고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95-28-3-330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96-27-5-029	가나설비	이영호	면목동524-4	2003.3.10	2003.0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1종 중랑98-28-2-29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00-27-3-01	장수건축 기계설비	한병용	중화동331-121	2003.3.10	2003.0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00-28-2-007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01-27-3-004	신흥설비	김동락	중화동291-10	2003.3.10	2003.0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98-28-3-11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99-27-5-010	태진설비	박건식	중화동290-2	2003.3.10	2003.0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98-28-3-033	우리설비	정진석	면목동350-58	2003.3.10	2003.0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95-28-3-321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95-28-3-321	일신설비	이국웅	목동180-16	2003.3.10	2003.3.10	2006.3.9~ 30일 이내	
난방시공업제2종 중랑99-28-2-013 가스시공업제3종 중랑99-27-3-011	양지설비철물	박길용	면목동611-5	2003.3.10	2003.3.10	2006.3.9~ 30일 이내	

◎성북구공고 제2003-109호

도시관리계획(안)열람

-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 가. 열람기간 : 2003. 3.12. ~ 2003. 3.26.
- 나. 열람장소 :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920-3722~3) 월곡제2동사무소(☎ 941-3962~5)
- 다.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 기정
 - 시설명 : 공공청사
 - 위치 : 하월곡동2-6호외 3필지
 - 면적
기정 : 2,230㎡
 - 최초결정일 : 성고시제63호 (1996. 7. 6)

- 변경
 - 시설명 : 공공청사
 - 위치 : 하월곡동2-2호외 1필지
 - 면적
변경 : 감)1,527㎡
변경후 : 703㎡
 - 비고 : 사회복지시설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

- 신설
 - 시설명 : 사회복지시설

- 위치 : 하월곡동11-11호외 5필지
- 면적
변경 : 1,848㎡
변경후 : 1,848㎡
- 비고 :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강북구공고 제2003-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열람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18),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1983. 2.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1983. 3.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1-134호(2002. 1. 5)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2-27호(2002. 5. 6)로 실시계획인가한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 및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 2.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강북구청 토목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당초

- 사업시행지 : 미아5동 1264-209~436- 19번지간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 명칭 :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 개설공사
- 규모 : B=5~7m, L=30m
- 결정고시 : 서울시고시 제3호(1969. 1.18) 서울시고시 제105호(198. 2.24) 강북구고시 제2001-134호(2002. 1. 5)
- 지형도면의 고시 : 서울시고시 제 174호(1983. 3.28) 강북구고시 제 2001-134호(2002. 1. 5)

○ 변경

-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 사업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규모 : B=5~7m, L=110m

- 결정고시 : 변경없음

- 지형도면의 고시 : 변경없음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변경없음)

다. 사업기간 : 변경없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토지조서·물건조서)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바.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2-63호(2002. 9.25)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03-8호(2003. 2.15)는 실효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901-6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 명 :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강북구 미아동 438-4	학	705	705	강북구 미아9동 127-5	서울시 교육감		강북구 미아동 438-4	학	705	705	종로구 신문로2가 438-4	서울시 교육감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강북구 미아동 1264-138	건물	연와조	46	강북구 미아동 1264-138	한학운	강북구 미아동 127-5	서울시 교육감	강북구 미아동 1264-138		변경사항	없음					
2	강북구 미아동 1264-172	건물	벽돌조	28	강북구 미아동 1264-172	서백준			강북구 미아동 1264-172		변경사항	없음					
3								미아동 1264-178	건물	연와조	35	강북구 미아동 1264-178	이경노				
4								강북구 미아동 1264-179	건물	시멘트 블럭조, 세면외증	11	강북구 미아동 1264-179	신현선	미아동 1261-9 미아동 301-10	이순이 삼양동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	
5								강북구 미아동 1264-183	건물	벽돌조	10	강북구 미아동 1264-183	고제봉				무허가
6								강북구 미아동 1264-184	건물	벽돌조	6	강북구 미아동 1264-184	정숙이 외1				무허가
7								강북구 미아동 1264-185	건물	세면부록 크조, 세면외증	7	강북구 미아동 1264-185	주복득				
8								강북구 미아동 1264-186	담장 정원수		1식 1식	강북구 미아동 1264-186	이상민				
9								강북구 미아동 1264-187	건물	세면부록 크조, 세면외증	12	강북구 미아동 1264-187	이옥자				
10								강북구 미아동 1264-209	건물	세면부록 크조, 연와조	34	강북구 미아동 1264-209	조봉진				무허가

◎강북구공고 제2003-88호

건설업(전문)양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전문) 양도신고를 수리하였기 동법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1. 양도신고수리일 : 2003년 3월 5일
2.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3. 양도신고 수리내역
 - 양도인
 - 상호 : 삼호공사
 - 성명 : 김성채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58-38
 - 양수인
 - 상호 : (주)삼호아키텍처
 - 성명 : 김성채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58-38

◎강북구공고 제2003-95호

건설업(전문)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전문) 등록을 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1. 등록년월일 : 2003년 3월 10 일
2. 등록번호 : 강북-03-28-02-01
3. 업종 : 난방시공업2종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8-3
5. 상호 : 장인건축설비
6. 대표자 : 최동출

◎강북구공고 제2003-100호

건설업(전문)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전문) 등록을 처리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1. 등록년월일 : 2003년 3월 11 일
2. 등록번호 : 강북-03-10-01
3. 업종 : 철근콘크리트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65-873
5. 상호 : 중혁종합건설주식회사
6. 대표자 : 정정석

◎은평구공고 제2003-122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에 대해 신규등록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은 평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처리 내역
 - 등록업종 : 난방시공업2종
 - 등록번호 : 은평03-28-2-6
 - 상호명(대표자) : 신의설비(유병철)
 - 성명 : 유병철
 - 주민등록번호 : 610317-*****
 - 소재지 : 응암동 427-100
 - 등록일 : 2003. 3.10.
 -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등록번호 : 은평-03-27-3-6
 - 상호명(대표자) : 진일설비(김선채)
 - 성명 : 김선채
 - 주민등록번호 : 450608-*****

- 소재지 : 역촌동 427-100
- 등록일 : 2003. 3.10.
-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등록번호 : 은평-03-27-3-7
- 상호명(대표자) : 은혜철물(이완복)
- 성명 : 이완복
- 주민등록번호 : 531219-*****
- 소재지 : 진관외동 175-340
- 등록일 : 2003. 3.10.

☉양천구공고 제2003-65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 전문건설업 등록처리 내역
 - 업체명 : 미래설비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등록번호 : 양천-03- 27-3-7
 - 대표자 : 김만호
 - 주민등록번호 : 640215-*****
 - 영업소소재지 : 양천구 신월동 603-7
 - 등록일자 : 2003. 3. 7

☉강서구공고 제2003-68호

강서구도노선변경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1. 도로노선 변경내역
 - 당초
 - 종류 : 구도
 - 노선명 : 염창동길 29

- 노선번호 : C20
- 기점 : 염창동 241-13
- 종점 : 염창동 30-100
- 총연장 : 0.61km
- 전용구간연장 : 0.61km
- 비고 : 2002.11. 5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내 편입된 도로 일부 폐지

○ 변경

- 종류 : 구도
- 노선명 : 염창동길 29
- 노선번호 : C20
- 기점 : 염창동 241-13
- 종점 : 염창동 26-10
- 총연장 : 0.38km
- 전용구간연장 : 0.38km
- 비고 : 2002.11. 5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내 편입된 도로 일부 폐지

☉강서구공고 제2003-6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1. 도로의 종류 : 구도
2. 노선명 : 염창동길 29(노선번호 C20)
3. 사용폐지구간
 - ① 염창동 20-16 ~ 30-100
 - ② 염창동 241-8 ~ 241-3
 - ③ 염창동 241-5 ~ 241-21
4. 중요경과지 : -
5. 전용구간 : 0.23km
6. 중용구간 : -
7. 폐지일시 : 2003. 3.
8. 비고 :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 일부 노선 폐지

◎강서구공고 제2003-71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신규등록 처리내역

- 신규등록

- 업종 : 난방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강서03-28-2-04
- 상호 : 명진설비
- 대표자 : 임유재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72-19
- 등록일자 : 2003. 3. 6

◎강서구공고 제2003-72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신규등록 처리내역

- 신규등록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등록번호 : 강서03-27-3-04
- 상호 : 성용설비
- 대표자 : 채규남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49-318
- 등록일자 : 2003. 3. 6

◎강서구공고 제2003-7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신규등록 처리내역

- 신규등록

- 업종 : 난방시공업 제2종
- 등록번호 : 강서03-28-2-05
- 상호 : 삼온보일러
- 대표자 : 안승섭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10-15
- 등록일자 : 2003. 3.10

◎강서구공고 제2003-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공람

1. 서울시고시 제86호('77. 3.29)로 도시계
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이 관
보에 미게재되어, 서울고시 제1993-
157호('93. 5.25)로 변경결정 및 강서구
고시 제1993-46호('93. 6.17)로 지적승
인재고시, 강서구고시 제1998-24호('98.
5.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가양동 148~146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차』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
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
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
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공고 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 가양동 148~146간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
 서구 가양동 146-26호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B)=8m, 연장
 (L)=6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호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 일로부터 2년간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공람장소 : 강서구청 토목과
-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참조
- 자.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
 명:별첨조서
-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
 (☎ 2600-6405 담당 : 공영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가양동 148 ~ 146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2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가양동 146-67	대	3	3	제일제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2	가양동 146-26	대	731	450	제일제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3	가양동 146-69	대	12	12	정행남	서울시 강서 가양동 146-63	(주)한국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설정	146-63에서 분할
4	가양동 422-56	도	10	10	서울시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가양동 146-26, 67	옹벽	H=1.4m	9m	담장	제일제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				
		브릭	H=1.8m	63m	담장						
		휀스	H=1.4m	63m	담장						
		세콤	붙착식	5개소	보안장치						
		은행나무	15~35cm	14주	조경						
		향나무	9~16cm	7주	조경						
		살구나무	19cm	1주	조경						
		철쭉		7주	조경						
		가로등	H=2.4m	3주	조명						
		고압브릭	소형	92㎡	포장						
		잔디		250㎡	조경						
		에어콘송풍기		1식	냉방기구						
		배전반	0.7*0.6*1.8	1식	전기기구						
		온수	4관	1식	난방배관						
건물	1,2,3층	75㎡(각 25㎡)	기숙사								
정화조	3.7*7.6	1식									

◎강서구공고 제2003-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공람

1. 서울시고시 제288호('78. 6.15)로 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544호('78.10.16)호로 지적승인되었 으며, 강서구고시 제2002-2호(2002.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승인된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동 법시행령제99조규정에 의거 관계도서 를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 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 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공고 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 공사
-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 서구 화곡동 산38~58-14간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B)=8m, 연장 (L)=47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 16호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 일로부터 2년간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공람장소 : 강서구청 토목과
-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참조
- 자.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 명:별첨조서
-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 (☎ 2600-6799 담당 : 이승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공사명 :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사용또는수용할 토지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화곡동 58-28	대	25	25	이만승	강서구 화곡동 58-10				
2	화곡동 58-27	대	38	38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1-1 대우센터지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정동지점)	근저당권	
3	화곡동 58-24	대	37	37	도현섭	강서구 화곡동 58-14				
4	화곡동 58-6	도로	868		강서구					
5	화곡동 748-4	구거	72		(국)	재정경제원				

물 건 조 서

공사명 : 화곡본동 산38~5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화곡동 58-28	대문	샷시 및 철재	1식		이만승	강서구 화곡동 58-10				
		담장	벽돌	H=2m L=8.1m							
		간판		1개							
		장미	관목류	6주							
		간판	"	1개							
		개나리	"	1주							
		대추나무	"	1주							
조경석	"	4m									
2	화곡동 58-27	담장	벽돌	H=1.5m L=4m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대문	철재류	1식							
		담장	벽돌	H=1.5m L=3m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	화곡동 58-27	리일락		D=14cm		이종규	강서구 화곡동 58-11				
		개나리		D=16cm							
		개나리		D=6cm							
		사철나무		D=10cm							
		회양목	관목류	6주							
		사철나무	관목류	1주							
		목련		D=23cm							
		조경석		4.5m							
3	화곡동 58-24	건물	스라브/벽돌(1층)	3㎡	주거	도현섭	강서구 화곡동 58-14				
		담장	벽돌	H=1.7m L=1.5m							
		대문	철재류	1식							
		담장	벽돌	H=2.4m L=8m							
		향나무		D=13cm							
		장목련		D=12cm							
		목화		D=14cm							
		백목련		D=16cm							
		리일락		D=16cm							
		사철나무	관목류	3주							
		회양목	관목류	5주							
		넝쿨장미	관목류	1주							
		개나리	관목류	1주							
		조경석		11m							

◎구로구공고 제200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열람

-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1999-127호(2000. 1.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된 아래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영업권)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구로2동 753-1~753-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구로2동 753-1~753-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8m, 연장 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 장소 : 구로구청 토목과(본관 4층, ☎ 860-2405~7)

토 지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2동 753-1~753-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705-51	대	2	2	이현갑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5 구로두산아파트 105-101	(주)한빛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청량리지점)	근저당권	705-12
2	구로동 705-52	대	28	28	정시형 정무진 정룡진 정동진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4-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13-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6-1				705-16
3	구로동 753-3	도로	232	232	국	(건설부)				753-3

물 건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2동 753-1~753-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	구로동 705-12	화단	나무	1주	이현갑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5 구로두산아파트 105-101				705-51 지상
2	구로동 705-16	점포 및 공장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48㎡	정시형 정무진 정룡진 정동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6-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4-4 부천시 심곡동 447-2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6-1				705-52 지상
3	구로동 707-14	점포	연와조세멘 벽돌조 세멘외죽	8㎡	이재욱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3-18				753-3 지상
4	구로동 707-22	점포	벽돌및 천막지붕	4㎡	백진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7-22				753-3 지상
5	구로동 707-23	점포	철골및 판넬지붕	5㎡	김일숙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7-23				753-3 지상

영 업 권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2동 753-1~753-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구로동 705-16	영업권	하나로축산	1식	도소매업 /식육	표창인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72-130 (4층)	705-52 지상
2	구로동 705-16	영업권	서울정밀	1식	제조/금형	김수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05-3	705-52 지상
3	구로동 707-14	영업권	기분좋은집	1식	식당/분식	김정옥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7-14	753-3 지상
4	구로동 707-14	영업권	돼지한마리	1식	음식/한식	박순남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7-2 목동2차 우성아파트 101-1517	753-3 지상
5	구로동 707-14	영업권	회진상사	1식	소매업 /기타 직물류 회장	고철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7-14	753-3 지상
6	구로동 707-22	영업권	꼬꼬치킨	1식	음식/치킨	서은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6-4	753-3 지상
7	구로동 707-23	영업권	금성철물	1식	소매업 /철물	이한복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26-26	753-3 지상

◎구로구공고 제2003-159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구로구청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 등록일자 : 2003. 3. 7
- 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 등록번호 : 구로-03-28-2-02
- 상호 : 원일건축종합설비
- 주민등록번호 : 620809-*****
- 대표자 : 박태성
- 소재지 : 고척동 192 지하1층
- 면허액 : 18
- 연락처 : 2613-9125

◎구로구공고 제2003-1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 2.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1-69호(2001. 7. 26)로 지형도면승인 된 아래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영업권)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본동 417-31 ~ 179-30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12m, 연장 65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 장소 : 구로구청 토목과(본관 4층, ☎ 860-2405~7)

토 지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개봉동 179-30	대	347	347	홍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9-8	(주)한국 상업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2	개봉동 179-43	대	144	144	홍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9-8	(주)한국 상업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개봉동 179-31
3	개봉동 179-32	대	131	131	홍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9-8	(주)한국 상업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4	개봉동 179-33	대	27	27	홍진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9-8	(주)한국 상업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5	개봉동 417-31	대	31	31	이인숙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52-26 평국세르빌 104동 101호				

물 건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	개봉동 179-11	집포및 공장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117㎡	홍대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203	(주)한국 상업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권	179-32. 33지상	
2	개봉동 179-30 179-43	담장 가건물 (공장)	세멘블럭 철골 및 천막지붕	1.8× 12m	홍대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203					영산 메탈(주)
				129㎡							(주)성민 건설
				165㎡							대한벤딩
				187㎡							

영 업 권 조 서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개봉동 179-30,43	영업권	영산메탈(주)	1식	제조건설/건축자재특수철물 가공,철물공사	정후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9-16	
2	개봉동 179-30,43	영업권	(주)성민건설	1식	제조건설업/창호 철물공사	이기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9-16	
3	개봉동 179-30,43	영업권	대한벤딩	1식	제조/벤딩 산업기계	김창모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2-186	
4	개봉동 179-32,33	영업권	구내식당	1식	식당	유영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9-11	
5	개봉동 179-32,33	영업권	용달공동 사업장	1식	운송사업	김명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19	

◎금천구공고 제2003-6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등록번호 : 03-27-3-2호
- 상호명 : 포앤디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김 창 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2698847
- 영업 소재지(전화번호) : 독산1동 1120 (☎ 898-1566)
- 등록일자 : 2003. 3.11.

◎영등포구공고 제2003-12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

- 업종 : 토공사업
- 등록번호 : 영등포03-02-01
-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번호 : 영등포03-10-01
- 업체명 : (주)하성토건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40766
- 대표자 : 박 정 호
- 주민등록번호 : 520722-*****
- 소재지 : 신길동 417-88
- 등록일자 : 2003. 3. 6.

◎영등포구공고 제2003-125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우리구 관내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사업부진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자진반납 신청이 있어 등록말소(반납수리)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

- 등록업종 : 난방시공업 제1종
- 등록번호 : 영등포-92-28-1-07
- 상호 : 성화종합설비
- 대표자 : 장도덕
-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3동 714-11

○ 반납사유 : 사업부진(자진반납)

○ 반납수리일자 : 2003. 3.10

◎동작구공고 제2003-83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성 명	소재지	수리일	비고
1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동작-03-27-3-11 동작-03-28-1-04	1992.07.15 1991.01.17	나래설비 최용구	사당5동 232-7	2003.03.11.	
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동작-03-27-3-12	1992.10.08	노송종합설비 정희식	상도3동 292-60	2003.03.11.	
3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동작-00-27-3-07 동작-00-28-1-02	1994.01.22 1990.01.25	팔팔종합설비 손종덕	사당5동 248-4	2003.03.11.	
4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동작-01-27-3-17 동작-01-28-1-07	1994.10.14 1993.04.10	우주종합설비 최길순	사당1동 1032-42	2003.03.11.	
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동작-03-27-3-09 동작-03-28-1-03	1995.03.17 1994.08.24	우천설비 홍형석	사당3동 163-33	2003.03.11.	
6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3-27-3-10 동작-03-28-2-15	1996.12.24 1996.11.20	신안종합설비 김영호	사당3동 141-51	2003.03.11.	
7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0-27-3-12 동작-00-28-2-08	1998.04.14 1997.01.28	광동종합설비 장광숙	사당1동 1022-44	2003.03.11.	

연번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성 명	소재지	수리일	비고
8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3-27-3-13 동작-03-28-2-14	1998.04.17 1998.04.11	동강설비 이한기	노량진2동 252-1	2003.03.11.	
9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3-27-3-14 동작-03-28-2-16	1998.04.28 1998.03.31	승환설비공사 이희신	대방동 44-83	2003.03.11.	
10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1-27-3-08 동작-01-28-2-12	1998.09.11 1998.05.29	동화열기상사 김동운	대방동 409-18	2003.03.11.	
11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동작-03-27-3-15 동작-03-28-1-05	1992.07.24 1988.11.30	(주)덕산에너지 강복중	상도1동 752	2003.03.11.	
12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0-28-2-24	2000.07.19	마을설비 선용대	상도4동 242-62	2003.03.11.	
13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2종	동작-02-27-3-31 동작-02-28-2-16	1998.11.02 1998.11.04	일영설비 김일식	사당동 68-1 (동작동)	2003.03.11.	
14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동작-03-27-3-16	1999.11.15	매일종합건축 신운석	사당3동 164-52	2003.03.11.	

◎관악구공고 제2003-100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신고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관 악 구 청 장

○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등록업종(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신고수리일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관악98-27-2-10호	새한설비공사	소순준	관악구 봉천본동 957-9호	2003.3.7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79-28-1-21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00-27-3-93호	삼삼종합설비	정지연	관악구 봉천4동 1573-22	2003.3.7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00-28-2-100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5-27-3-355호	아 성 설 비	지영격	관악구 봉천7동 207-32	2003.3.7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5-28-1-502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9-27-3-59호	동 양 설 비	서영철	관악구 신림13동 700-54	2003.3.7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9-28-2-87호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관악01-27-2-16호	대성엔지니어링	연문흠	관악구 봉천5동 494-4	2003.3.7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00-28-2-105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5-27-3-371호	왕 성 설 비	이현우	관악구 신림본동 1633-6	2003.3.7
난방시공업제1종 관악95-28-1-497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관악98-27-3-20호	광 성 설 비	김광녕	관악구 신림13동 808-331	2003.3.7
난방시공업제2종 관악97-28-2-530호				

◎서초구공고 제2003-88호

**도시계획시설(뒷별어린이공원)조성계획
변경에따른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2(2002. 6.28)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2-87(2002. 8.26.)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뒷별어린이공원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21-1번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뒷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완료

- 사업의명칭 : 뒷별어린이공원 조성
- 다.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794.8㎡
- 사업시행면적 : 5,794.8㎡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마. 사업기간 : 2002. 8.26. ~ 2003. 2. 5.
- 바. 공사완료일 : 2003. 2. 5.

◎강남구공고 제2003-120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1. 전문건설업 등록내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년월일
실내건축 공사업	강남-03-01-11	(주)탑엔빌	노명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6-70	2003.3.3
토공사업	강남-03-02-10	주석건설	윤주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16	2003.3.3
시설물유지 관리업	강남-03-29-02	(주)도화구조 기술사무소	이재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15	2003.3.3
실내건축 공사업	강남-03-29-02	(주)엔이이디	박종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0-2	2003.3.3
조경식재 공사업	강남-03-18-02	(주)정경원	유미영	서울 강남구 청담동 9-3	2003.3.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강남-03-19-04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강남-03-13-02	신한설비(주)	한지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63-1	2003.3.5

◎강동구공고 제2003-6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열람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125호(2001. 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어 강동구고시 제6호(2003. 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형도면(정정)승인된 암사동 185~17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도시계획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599 ~ 596-3간
- 나. 사업명 : 강동구 천호동 185~176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10m, 연장 110m
폭 6m, 연장 30m
- 라.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열람장소 :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도시계획도로과(☎ 02-480-1405)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첨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암사동599	1,877	87	전	조남식	경기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166번지 성도(아)102-1005	동국제강(주)	중구 수하동 50번지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2	암사동597-3	1,822	61	전	이의훈	강동구 암사동 597-2				
3	암사동 597-1	3,236	50	전	정옥자	중구 충무로4가 120-3				
4	암사동596-3	656	237	전	김정자	중구 황학동 478				
5	암사동 595	59	59	잡종지	박찬옥	중구 주교동 202-5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편입내용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암사동 593-3	건물	비닐하우스	41	박학주	강동구 암사동 178-33					
2	암사동 597-1	간판		2	송인구	강동구 암사동 597-1 (신라농원)					
3	암사동 597-3	건물	샷시,유리	12	김용주	강동구 암사동 597-3 (늘푸른 꽃 직판장)					
4	암사동 599	건물	콘테이너	14	김봉배	강동구 암사동507-4 (주)기흥종합상사					
5	암사동 599	대문	철문	1식							
6	암사동 599	담장	합석	1식							
7	암사동 599	건물	콘테이너	2	조화자	강동구 암사동599 대원공병					
8	암사동 599	대문및담장	합석	1식							

사업소 고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3-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받은자

- 성명 : 천강산업개발(주) 대표 강희태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6 제2주공@30-305

○ 허가점용(행위)개요

- 하천명 : 한강(영등포구 여의도동 85)
- 점용(행위)면적 : 280㎡(선박4척)
 - 한라산73호
 - 한라산203호
 - 한라산205호
 - 한라산206호
- 점용목적 : 공사대기
- 점용기간 : 2003. 3.11. ~ 2003. 6.30
- 허가연월일 : 2003. 3. .

사업소 공고

⊙은평수도사업소공고 제2003-2호

**대부계약안내및변상금처분사전통지서공시
송달**

○ 변상금처분사전통지서

1.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의2에 의거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제목 : 변상금처분

나. 당사자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한신부동산(주)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19 2002. 1. 1 ~ 2002.12.31

27.64㎡ 무단점유 - 한신부동산(주)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마.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7조

바. 의견제출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4동 38-69 은평수도사업소 총무과

사. 제출기한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10 이내(2003. 4. 7까지)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수도사업소 총무과 김정규(☎ 397-

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2003. 4. 7까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계약 안내

1. 현재 귀사에서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사업소 소관 수도특별회계 시유재산으로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2003. 4. 7까지)에 대부신청 및 대부계약한 후 사용하여 주시고, 만약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 수익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동시행령제105조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에 의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시유재산(토지)의 대부료산정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오니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신청 및 대부계약장소 : 은평수도사업소 총무과 계약팀

나. 지참물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각 1통씩,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0,000원), 서울특별시수입증지(950원)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수도
사업소 총무과 계약팀(재산담당
김정규 ☎ 397-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은평수도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공고

제2003-5호

한강선유도공원음식점운영사업자선정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3조에 의거
한강 선유도공원 음식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한강 선유도공원 음식점 운영
사업자 선정
- 시설 현황 및 규모(1층 : 일반음식점,
2층 : 휴게음식점)
 - 총 825㎡(250평) : 지하1층, 지상2층,
데크
 - 지층 : 232㎡(70평) - 창고
 - 1층 : 234㎡(71평) - 홀, 주방, 화장
실 등
 - 2층 : 111㎡(34평) - 홀
 - 데크 : 248㎡(75평) - 1층149㎡, 2층
99㎡
- 예정가격 : 일금칠천오백일십만원정
(₩75,100,000)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3. 3.17
(월) 14:00 우리 사업소 소회의실(3층)
-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3. 3.
25(화) 14:00 우리 사업소 공원이용과
(2층)
- 개찰일시 및 장소 : 2003. 3.25(화)
15:00 우리사업소 소회의실(3층)

2. 위탁 기간 : 2003. 4.21 ~ 2006. 4.20
(3년)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주사무소)를 둔 개인·단체·법인으
로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
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2인중 1인이 낙찰자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 방법

- 입찰은 상시 입찰로 하며 우편, 전자,
현장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2003. 3. 25.
14: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상시 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
지 투찰된 경우에만 유효하고, 다른
명의의 상시 입찰함에 투찰된 입찰서
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상시 투찰함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원이용과(2층)에 비치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납부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금액을
입찰등록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아
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p>귀속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시에는 우리은행 한남동지점에 납부 후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증을 밀봉하여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p>7. 입찰의 무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p>8. 관리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탁관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용료(계약금)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1년 단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탁사용료 잔액분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p>9. 청렴계약 이행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10. 입찰 참가 신청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 신청서(우리사업소 비치)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 단체등록증(단체), 등기부등본(법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경우 위임장) 각1부. 	<p>11. 특기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수수료는 5,000원이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유의서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천재지변 및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원이용과(☎ 3780-0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성동소방서공고 제2003-6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p> <p>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 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3월 15일 성 동 소 방 서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번호 : 제서울성동 2003-2호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 ○상호 : (주)동남기술단 ○대표자 : 이승택외3인 ○주민등록번호 : 500514-***** ○영업소재지 : 광진구 광장동 186 ○등록일자 : 2003. 2.27
--	--

◎서초소방서공고 제2003-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서 초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 서울서초 2003-4호
-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
- 등급 및분야 : 3급기계
- 상호 : 성원설비 기술사사무소
- 대표자 : 원진훈
- 주민등록번호 : 500702-*****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8-6
- 등록일자 : 2003. 3. 7

- 영업소재지 :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이비지 센터4층407호
- 등록사항
 - 등록번호 : 제서울구로 95-03호
 - 등록일 : 1995. 1.12

◎구로소방서공고 제2003-6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기재사항 변경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의 등록변경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구 로 소 방 서 장

- 변경전
 - 상호 : (주)남도소방설비
 - 업종 :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1급)
 - 대표자 : 노균희
 - 영업소재지 : 구로구 신도림동 410-5
- 등록사항
 - 등록번호 : 제서울구로 95-03호
 - 등록일 : 1995. 1.12
- 변경후
 - 상호 : (주)남도소방설비
 - 업종 :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1급)
 - 대표자 : 노균희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문서번호 : 청환67500-1509
- 제 목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따로붙임 물품을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기관(부서)은 2003. 3.19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 2. 위 기간내 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중 랑 구 청 장

가. 관리전환물품명세서

청소차량 관리전환 물품명세서

2003년

연번	차 명	등록번호 (구번)	최초등록일 (년식)	상 태	용 도	취득금액 (천원)	비 고
합계		8대				86,776	
1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8 두1582 (205)	'90.08.02 (90)	노후차량	수집차	10,21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2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7 그3000 (216)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3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80도5247 (218)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4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7 그3007 (219)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5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7 그3010 (220)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6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80도2764 (223)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7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7 그3052 (224)	'91.01.29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
8	점보타이탄 2.5톤진개덤프	85고1738 (230)	'91.02.28 (90)	노후차량	수집차	10,937	매연후처리 장치포함